

第253回國會 (臨時會)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4月27日(水)

場 所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2005년도 정책연구개발용역사업에 관한 보고
2. 전파차단장치 법안 관련 공청회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審査된案件

- 1. 2005년도 정책연구개발용역사업에 관한 보고 1
2. 전파차단장치 법안 관련 공청회 2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27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해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매달 짝수 달에 국회가 있습니다마는 4월 국회로서는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소위원장으로 부터 2005년도 정책연구개발용역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받은 후에, 이미 의사일정을 통보해 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는 전파차단장치 법안 관련 공청회, 그리고 오후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이렇게 2건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전파차단장치 법안 공청회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 공청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결할 사항이 있으니까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정책연구개발용역사업에 관한 보고

(10시17분)

○위원장 이해봉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정책연구개발용역사업에 관한 보고를 상정

합니다.

유승희 정책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승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소위원장 유승희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정책연구개발용역사업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책연구개발용역사업은 상임위의 안전심사와 정책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각각 4건씩, 작년에는 두 건의 용역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저를 포함하여 서상기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서혜석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11일자 1차 회의를 열고 용역과제 선정 방법을 비롯한 수행방식의 개선, 그리고 추진일정 등을 논의·결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추천과제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2005년도에 우리 위원회가 추진할 연구개발용역사업에 대한 과제선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위원회 연구개발용역사업비 총 4000만 원에 대하여 2000만 원은 선정된 과제를 추천하신 위원님들이 토론회나 세미나를 과기정 소속 위원님과 함께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동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중전과 같은 개별연구과제로 각각 나누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과제의 경우에도 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연구결과물에 수렴하는 것을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등 추진방식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과제는 한화갑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지역의 산·학·연 협력 정착을 위한 유인 지원시책 조사 분석’ 등 5건의 과제를 선정하였고, 개별연구과제는 진영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정책 규제기구 개편방안’ 등 2건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과제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5월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 중에 용역 수행에 관한 중간점검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용역 결과의 제출과 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과제 진척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식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인 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행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 연구개발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동과제를 수행할 때는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유승희 정책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소위원님들 심사하시는 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우리 위원회의 2005년도 정책연구개발용역사업이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말씀 드리고, 정책소위원회에서는 올해 용역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

과를 다시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파차단장치 법안 관련 공청회

(10시21분)

○위원장 이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파차단장치 법안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는 여러 번 개최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공청회를 열게 된 취지와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로 최근에는 대입수능시험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고 그밖에도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험장 및 공공장소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의회, 공연장, 시험장 등의 공공장소에 전파차단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한편 전파차단기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5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차단기의 설치를 허용하는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과 논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좋은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네 분의 전문가로부터 각각의 기술을 모두 듣고 나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묻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 진술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앉은 좌석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부터, 김종현 광운대학교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계경문 국민대학교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열 대주주식회사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식 SK텔레콤 상무이사님 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이상 소개해 드린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진술은 핵심 위주로 해서 가능한 한 요약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것은 아마 한 시간, 두 시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대충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을 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구해 오신 것을 발표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좌석 배정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현 광운대학교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종현** 광운대학교 전파공학과 김종현 교수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전파차단장치의 기술적 검토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통신의 급속한 발전은 한편으로는 생활에 많은 편리함과 변화를 가져다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으로 오는 심각한 소음 공해 및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므로 특정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 및 호주 등과 같은 나라에서도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하여 일정 지역 안에서의 이동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이동전화의 착·발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실험무선국으로 허가하여 한정된 장소에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한 이동통신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기술기준이 없고, 특히 차단 범위 밖에 있는 이동통신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파차단장치의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전파차단장치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지국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차단하여 휴대전화기의 수신신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내외에서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에 있는 전파차단장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대부분 광대역 잡음방식으로 이 방식은 방해 대상이 되는 기지국 송신기의 주파수 가변 범위 전역에 걸쳐서 잡음전파를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군용으로 사용하는 재밍(Jamming) 장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파차단장치는 군용에서 사용하는 이런 재밍장치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CDMA 방식의 개인휴대전화기 또는 이동통신기기의 사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지역에서 이동전화나 개인휴대전화의 기지국의 신호의 레벨보다 높은 잡음을 방사함으로써 기지국으로부터 단말기에 보내는 신호를 차단하여 단말기가 통화불능상태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파차단장치의 성능 및 차단구역을 설정하거나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라미터로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주파수와 송신출력 등이 있습니다. 사용주파수는 차단이 필요한 이동전화 혹은 개인휴대전화대역의 수신신호대역에서만 동작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주파수대역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차단장치의 출력은 차단하고자 하는 구역에서 수신되는 기지국의 전력보다 높은 레벨로 방사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차단구역의 설정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전파차단장치의 수량 그리고 차단영역의 전파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파차단장치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년 전에 전파차단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부 시험들이 수행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3개사의 제품

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동작시켰을 때 차단거리 및 전력을 측정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각각의 전파차단장치가 동작하였을 때, 첫째 일정 지역 안에서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전화의 사용 가능 유무, 둘째 차단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전화의 통화에 대한 영향 여부에 대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시험결과 각 업체의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주파수는 기지국의 주파수와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파차단장치의 송출전력은 각 업체마다 달랐으며 차단장치의 송신출력에 따라 통화불능 상태가 되는 차단구역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파차단장치가 건물의 어느 위치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차단영역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누설전파에 대한 타 지역으로의 영향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전파환경 특성과 구조물의 재질 및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2001년과 2002년에도 전파차단장치의 실험국 운용을 통한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설치조건, 운용조건, 기술조건에 대한 항목을 검사하였습니다.

시험결과 다양한 전파환경에 따라서 통화 차단 효과가 다르며 전파차단장치가 설치되는 건물의 구조와 재질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로부터의 누설 전력의 여부가 측정되었고 전파가 누설될 경우 인근 외부지역의 통화가 차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차단장치의 차단 성능입니다.

전파차단장치의 성능은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전파환경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또한 차단장치의 공급업체에서 설정한 기술적인 파라미터들, 즉 차단주파수나 방사전력 등에 따라 성능과 특성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특정 전파환경에서 전파차단장치가 차단하고자 하는 영역을 100% 커버하지 못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파차단장치가 차단하고자 하는 영역을 100% 커버할 경우 특정 전파환경에서는 차단장치로부터의 누설전파에 의하여 주변 영역이 통화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파차단장치의 차단 성능을 제한할 기술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차단구역의 설정입니다.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지역에서의 차단 범위 및 다른 지역으로의 영향에 있어서는 전파차단장치의 출력과 각 지역의 전파 특성 및 구조물의 재질 및 조건 등에 따라 영향의 차이가 다릅니다.

만약 타 지역으로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설치장소의 특수재질 및 구조 등과 같은 지물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영화상영실이나 공연장처럼 특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전파차단장치로부터의 누설전파가 작아 주변 영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파차단장치를 동작시켰을 때 타 지역으로의 영향을 막기 위해 그 건물 내의 정확한 전파환경정보를 이해한 후에 전파차단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일부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누설전파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통화불능 지역을 설정하여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통화불능에 대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주변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차단영역에서 다른 기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전파차단장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전파장애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파차단장치의 몇 가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고찰하여 본 결과 전파차단장치의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전파차단장치를 통하여 특정 지역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할 경우에는 설치장소 및 지역에 따른 전파환경, 구조 및 재질에 따른 사용 장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악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단영역 외부로 전파가 유출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화 불가능 지역에 대한 사용자들의 민원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리고 전파차단장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역기능들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책이 없이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김중헌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경문 국민대학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계경문 계경문 교수입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진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법적인 검토에 앞서서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파차단장치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것보다 허용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전파차단장치는 2004년 11월 수능부정사태 이후에 다시 수능부정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의원입법 발의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휴대전화로 인한 소음은 건전한 시민의 상식에 맡길 일이지,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휴대전화 휴대 금지 등을 통한 감독관청의 철저한 감독에 의해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원천봉쇄라고 하는 형식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 시민사회에서는 적절치 않은 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형법에서는 이른바 허용된 위험의 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운행이 인명사고를 자주 일으킨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앤다거나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법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전반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휴대전화의 일부 부작용 때문에 일정 장소와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넘어서는 민주 시민사회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차단장치는 수능시험을 실시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이나 연주회장, 교회, 극장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파차단장치 설치를 일단 허용하기 시작하면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남설될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파차단장치 설치의 허용 또는 제작이 일반화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파차단장치가 불법적으로 사용이 된다거나 부적격제품을 생산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법규로 단속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실효성이 매우 의문시됩니다. 불법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해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불순집단이 그 주파수를 임의로 변경해서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의 소통에 지장을 줄 염려가 충분히 예상되고요, 전파차단장치에 고출력의 증폭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폭장치는 아주 간단한 장치인데요,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국가의 비상 또는 보안통신망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앞에서 진술인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하는 장소를 완벽하게 커버하지 못하거나 전파차단장치가 목표로 하는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휴대폰 등의 통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과연 이러한 것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통신을 방해할 경우 이러한 법규를 제정하거나 행정처분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까지도 거론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법적인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하고 국제법적인 문제, 헌법적인 문제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개별적인 문제로서 각 개별법에는 입법목적에 있는데 이 개정안은 각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상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용장치 때문에 무려 3개의 법률 8개 조항을 바꾸어야 된다는 점도 있고요,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2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린다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입법목적에 개별조항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자 스스로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게 한다는 것인데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전파법 제14조에 의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주파수이용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이용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전파차단장치를 스스로 설치하게 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실질적 개정의 효과도 발생하게 하고 국가의 입법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입법의 형식입니다.

전파차단장치 설치 허용의 법률은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형식이 마땅한데 이 입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설치를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의 강제수단이라든가 또 기간통신사업자 자체가 일반사용자, 말하자면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를 예상해서 그 설치를 꺼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또 하나 개정안 제29의2제2항제3호에서는 설치장소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헌법 제37조 위반의 위헌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특정하는 것이 현대 행정법학의 주류이고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규정해야 된다고 하는 의회유보 또는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그냥 막연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권한을 정부에 위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벌칙입니다.

개정안 제82조의2에서는 전파차단장치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미 지적한 기술적 문제점 때문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자체가 이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전파법 자체가 국제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경을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문제와 헌법적인 문제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제법적인 문제로서 우리나라 전파법 제4조는 “전파에 관하여 조약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법조항입니다마는, 여기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ITU가 제정한 국제전파규칙입니다. RR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요, 이 전파규칙에서는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을 이동 또는 고정업무용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동업무용으로 분배를 하였고 기 때문에 전파차단 업무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전파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문제가 되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파차단장치의 허용은 국제적인 규율인 분배, 할당, 지정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를 무시한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흔히 외국의 사례를 봅니다마는 미국, 프랑스, 호주, EU 등에서는 법률 또는 어떤 권고안에서 전파차단장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지는 발견됩니다마는 법규에 의해서는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실험국 형태로 10mW 정도의 아주 약한 것으로 조금 편법 비슷하게 130개국 정도를 허용하고 있을 뿐으로 지금 실험단계에 있는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헌법학자는 아닙니다마는 흔히 거론되는 것은 휴대폰 사용자의 행복추구권이나 통신의 자유권, 사생활의 자유권, 전기통신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이런 개별적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조항은 헌법 제37조에 의한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입법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법률이 과연 질서유지라든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냐, 그다음에 이 조항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과 과연 상충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입법안은 기본권들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고도의 헌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장이 질서유지가

필요한 공공장소인지 여부, 그다음에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즉 과잉금지원칙상 지켜야 될 그 법률이 목적이 정당하나, 방법이 적정하나, 피해의 최소성이 있느냐,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고 있느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진술인 개인으로서 공공장소의 여부, 목적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다소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과연 적정하나의 문제는 이 개정안은 예상되는 피해는 외면한 채로 수능시험에 관해서 관리 감독만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 하나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수단이 있을 때 그 방법을 채택할 것이지 이 방법을 채택했다면 더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개정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입법 때문에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든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행정 및 민사소송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계경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열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충열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대주에 근무하고 있는 김충열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1999년도 후반부터 당시 소음공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개발을 해서 초기 상품화를 진행을 하였다가 법적인 문제로 정보통신부와 오랫동안 제품의 기술개발 및 합법화 활동을 했던 과거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장, 홍창선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 사용자 환경을 말씀드리면, 발표를 드리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 이내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다시 조사한 결과로는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일본인데 일본은 저희보다도 약 10% 정도 떨어지는 65% 정도의 보급률이고

한국이 77%를 육박하는 단연코 세계 최대의 핸드폰 보급 국가로 지금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인구밀도가 높고 복잡한 여러 가지 다중건물 속에서의 소음공해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통신환경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소음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문화 정착이라는 부분으로 해결을 해 왔으나 지금 현재 실상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2004년도 후반기에 새로 발생된 대입 수능에서의 대대적인 부정 문제로 인해서 전파차단기가 소음공해 문제와 수능 부정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술적 장치로 부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 내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98년도 초에 제품이 개발이 되고 99년도에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법적인 문제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정부와 공청회를 하고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국립극장, 여러 개의 공공장소를 정부가 허가를 해서 실험국으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참가했던 제조사의 제품들을 정부의 관련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품의 성능, 품질들을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각 회사마다 제품의 품질적인 차이라든지 실력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정한 기술기준에 의한 양질의 전파차단장치를 표준화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실패가 됐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서의 도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현재 차단장치를 쓰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별다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이라든지 교회, 성당 등에서 소음공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서는 심지어 주빈인 신랑이 핸드폰 벨이 울려서 결혼

식이 중단되는 사태도 왕왕 있어서 결혼식장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은행들의 경우는 도둑들의 부정 통화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는 죄수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해서 감옥에서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입법과정의 정숙의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능 부정 문제와 유사하게 10대 대학생들이 문자메시지를 활용해서 영상 캐치를 해서 컨닝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 사용 중에 있고요.

로마의 4대 대형 정당에서는 현재도 실제로 전파차단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화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 4월 18일 교황 선출 시에 시스티나 정당에서도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해서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한 대외의 보안 유지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도 극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극장이나 콘서트홀 등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 초부터 정부가 허가를 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호텔, 레스토랑 이런 데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으로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의 경우 무샤라프 대통령이 원격조정 폭발장치로 인해서 테러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핸드폰의 원격 Triggering을 활용하면 폭발장치가 원거리에서도 폭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해서 경호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강제적으로 폭발 Triggering을 지연시킴으로써 암살을 모면했던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비아에서도 카다피 대통령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법적으로 엄밀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최대의 수혜자는 미국의 정부로서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Netline이라는 회사로부터 장치를 수입해서 국가의 보안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핸드폰 기능이 발달하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영상메시지를 대외로 송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도 최근에 다른 비즈니스 목적으로 국내 유명 식품회사를 방문했었는데 정

문에서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다 수거해서 핸드폰 단말기의 입을 다 벌려 가지고 어떤 장치에 집어 넣어서 제 목걸이에 달려져서 통화를 못하게 하고 특히 어떤 시설을 볼 때 그 안의 장비라든지 생산시설에 대한 도찰을 막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따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우리보다는 좀더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우정성 산하에 연구회를 결성해 가지고 이 장치에 대한 부분을 법적·기술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2월에 특정 공간에서 이동전화 사용을 억제키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서 이동전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설치·운영에 관한 조건을 드디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1998년 12월부터 공연장이나 극장에 실험국 개념으로 첫 설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연도에는 약 2~3개의 설치장소가 있었는데 7년여 세월이 흐른 현재 이 숫자가 날로 증가되어서 150여 개의 장소에 총 400여 대의 전파차단장치가 실험국 형태로 계속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일본 우정성의 이 분야 담당자인 Mr. Kondo 씨와 확인을 한 결과로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허가한 사이트에서 수요자의 반응은 약 70%가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150여 개소의 대형 공연장이나 극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숫자이면 일본의 큰 공연장, 극장들은 거의 이 장치를 쓰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4월경에 실험국을 좀더 발전시켜서 실용국 개념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던데 이 부분이 제품에 대한 출력이라든지 기술기준을 좀더 연구해서 성안을 하기 위해서 7월경에 실용국으로 확대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전파차단장치 합법화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차단장치 업체들은 그동안에 단순히 제품에 대한 부분을 개발해서 이 부분을 제품이 이상이 없다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옆에 진술인으로 나와 계신 광운공대 와도 협력해서 전파차단장치를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얻어진 결과가 방사전력이 기지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리고 영화

상영실이나 공연장 같은 방음시설이 잘되어 있는데에서는 누수전파가 전혀 없다, 그리고 차단효과가 좋다, 그래서 적당한 설치조건과 운영조건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쾌적한 통신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0년도 5월에 과연 전파차단장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부분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산자부 산하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건의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얻은 결론은, 각 학계 및 여러 분야에서 오셨던 심의위원들에 의한 결정이었었는데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일부 개인에 대한 통신의 자유 제한은 헌법상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에 따라서 그동안 정부에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허용을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던 부분을 바로 실용국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스타팅을 시켜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파차단장치의 합법화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전 세계적 유례가 없는 대대적 수능 부정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이동전화 전파차단장치는 합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명분이 더욱더 축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당시에 수능 부정 발생 이후 인터넷을 통한 포털사이트의 여론조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경우 총 조사자 4823명 중에 80.92%인 390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한겨레'에서도 81.2%가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해서라도 수능 부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보도되어 있었는데 사실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공대에서부터 이런 수능 부정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오래 전부터 써 왔습니다. 그런데 수능 부정이 부각이 되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쓰려다가 오히려 여론과 정보통신부의 현행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기존에 잘 써 오던 전파차단장치마저 쓸 수 없는 상황으로 포기를 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KBS 9시 뉴스에서는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전파차단장치의 성능을 검토하고 기술은 가능한데 법은 불가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IT산업이 발달하면서 핸드폰이 가져다주

는 기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반비례해서 핸드폰이 주는 역기능에 대한 적절한 보완재적인 측면에서의 전파차단장치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주행을 빨리 해서 어떤 목적지를 도달하는 것이 근본목적이라면 속도 조절 및 때로는 자동차를 세워야 되는 브레이크장치가 있어야 하듯이 전파차단장치도 핸드폰의 좋은 순기능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반대적인 역기능을 소화시키기 위한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합법화를 위한 기술적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누설전파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우선은 최대 전력을 200mW 이내에서—과거에 실험국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2W까지의 고출력장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고출력장비는 누설전파의 위험이 크니까 출력을 최대 200mW 이내에서—이를 검토해서 설치의 위치와 설치수량, 출력을 잘 조절하면 좋은 전파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최근에 다른 기술적인 대안장치로 검토했던 금속탐지기나 전파감시장치와는 달리 이 장치는 근원적으로 목적하는 장소의 이동전화 사용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고려되는 장치는 일일이 수험생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추적을 수색을 하듯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발언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결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행법령에서는 전파차단장치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다는 조항으로 고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고쳐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김충렬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식 SK텔레콤 상무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장윤식**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장윤식 상무입니다.

먼저 밤낮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진술인으로 서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높으신 어른분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SK텔레콤에 직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통신에 오래 근무한 전문가의 입장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할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파차단장치라는 개념을 명확히 밝혀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장치를 설치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파차단장치는 없습니다. 전파차단시설은 있어도 장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파라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없습니다. 아직도 전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전파는 한 번 발사되면 에너지가 소멸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로 된 수십 cm의 시멘트 안이나 수cm의 납으로 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전파를 발생시키면 전파가 차단되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전파는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말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엄밀한 의미는 전파를 일단 발사하면 거기에는 어떤 신호가 실리게 되는데 여기와 똑같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똑같은 신호를 발사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시스템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 원래 목적하던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즉 서비스를 차단하는 장치가 전파차단장치입니다. 그렇게 엄밀히 해석을 해야만 뒤의 것이 여러 가지 풀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999년부터 이동전화 소음 때문에 전파차단장치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납이나 시멘트로 밀폐된 공간에서 방해전파를 쏘지 않으면 그 방해전파가 계속 밖으로 나와 가지고, 즉 원래 차단하고 싶어 하는 구역 외부로까지 서비스를 불통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나 공연장이나 콘서트장 같이 차폐가 좀 잘 돼 있는 지역 말고 도서관이나 교실처럼 창문 같은 개폐시설이 있는 곳은 공기와 똑같습니다. 어떤 말이나 하면 방해전파의 세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오는 전파보다도 더 세야만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92개 시험장이 있는데 그것을 다 꺼놓으면 서울시내가 온통 다 마비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주 차폐가 잘 돼 있는 공연장은 일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실 같은 데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전파가 누설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양성화되면, 제도화되면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방해전파를 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싸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큼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단속할 수도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세 번째로 단말기는 항상 교신을 통해서 전파 간섭이라는 잡음이 있으면 자동으로 전파를 세계 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가 증가해 서비스 품질의 차단구역으로 아주 먼 데까지도 기지국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전파차단장치는 나중에 관리가…… 지금 전국의 모든 기지국은 사업자들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든 전광판을 통해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누가 감시를 하겠습니까? 특히 전파차단장치는 고장이 나게 되면 발진이 돼 통신을 마비시키는 사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것인데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800MHz대 셀룰러 주파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8GHz대 PCS 주파수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W-CDMA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것은 2GHz대를 씁니다. 또 WiBro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2.3GHz를 씁니다. 그리고 TRS도 이동전화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5GHz 무슨 랜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무선데이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파수 대역마다, 모든 서비스마다,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차단장치를 또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차단장치를 보면 예를 들어 800MHz 하나를 만들 때 값싸게는 100만 원 정도도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PCS 올라가고 여기에 품질을 조금 더, 필터를 조금 더 샤프하게 잘 만들려면 가격은 더블, 더블, 더블이 됩니다. 사실 필터라는 것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러한 품질 좋은 전파차단장치를 만들려면 굉장히 비용

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순기능, 우리가 목적하는바 예를 들어 수능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든가 또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든가—소음 중에도 벨소리입니다—과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이것밖에 없는지, 정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은 제가 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창선 간사, 서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1999년부터 검토한 사항인데 실제로 전국 고사장에 설치하게 되면 수험 당일은 전국의 통신이 거의 마비되는 사태가 옵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도심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외국 사례도 많이 발표했는데 전세계 어느 나라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허가한 곳은 없습니다. 일본이 진동 기능이 없을 당시 벨소리가 하도 나니까 차폐시설이 잘 되고 방음이 잘 된, 문이 없는 공연장에 한해서 실험국으로 허가해 한정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개인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탈리아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국가 안보라든가 특수목적으로 제명시설을 사용한다고 해서 차단장치를 국가가 합법화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IT강국을 지향하고 있고 또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역기능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장윤식 SK텔레콤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7분 정도로 제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선 위원 열린우리당 홍창선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파차단장치 허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연장이라든가 결혼식장에서도 아닌 게 아니라 따르릉 울려 가지고 주례가 웃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파차단이 원하는 구역에만 정확하게 가능한가’ 이런 기술적인 검토를 주신 것을 보니까 전파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구조물의 재질이라든가 조건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달라져 인근지역에서 통화차단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김종현 교수 자료에는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진술인 김종현 맞습니다.

○홍창선 위원 그다음에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 대목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다음에 아마 수능시험 때문에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수능 방지 대책으로 이것을 수험장에 설치해서 충분한 것이냐, 또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등 신규 주파수 대역이 사용 시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이슈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한테 기술적인 측면을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파차단장치가 차단하고자 하는 영역을 100%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술인 김종현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와 조사, 실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진술을 했다시피 지금 문제는 저희가 1999년도에 사용했던 전파차단장치 제품들의 경우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제품을 가지고 차단영역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을 설계한다든지 또는 기술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했습니다.

○홍창선 위원 김충열 이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김충열 예를 들어 공연장이라든지 차폐시설이 잘 된 데에서는 매우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라든지 개폐시설이 많은 곳은 제품을 많이 정제해서 기술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창선 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이나 극장 같은

데는 잘 된다는 말씀이지요?

○**진술인 김충열** 그렇습니다.

○**홍창선 위원** 그런데 교실 같은 데는 문제가 좀 있겠네요?

○**진술인 김충열** 예, 누설전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창선 위원** 그다음에 SK텔레콤의 장윤식 상무님은 제한적이라도 법·제도적으로 허용되면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음성적으로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 또 우리가 신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때마다 차단장치 추가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면 비용을 앞으로 통신회사가 부담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가령 자기 집에 차단장치를 하려고 할 때 본인 비용으로 하게 되는 것을 걱정해 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술인 장윤식** 설마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통신회사가 그것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까마는……

○**홍창선 위원** 아니, 걱정을 하시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왜 걱정을 하시는지?

○**진술인 장윤식** 비용보다도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개발이라든가 신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달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홍창선 위원** 됐습니다. 제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계경문 교수님한테 법적인 측면으로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전파차단장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가정할 때 법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상해야 되나요?

○**진술인 계경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한 사람, 그다음에 설치한 장소의 시설자, 나아가서는 이것을 허용해 준 정보통신부, 더 나아가서는 입법을 한 국가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홍창선 위원** 그렇게 한없이 얘기하면 법적인 해석이 너무 막연해 보이네요.

그러면 만일 도서관에서 누가 자꾸 전화를 걸어대 소리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요?

○**진술인 계경문** 일상적인 경우 말씀입니까?

○**홍창선 위원** 예, 차단이 안 돼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왔다고 그랬을 때.

○**진술인 계경문**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예절모드로 바꾸지 않은 사용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홍창선 위원**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진술인 김충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실험국이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 거의 모든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창선 위원** 여기에 정통부 관계자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국의 2만여 개 수험장에 된다는데 만약 설치하게 된다면 그 비용을 학교에서 댁니까, 수험생이 댁니까, 누가댁니까?

○**정보통신부전파방송정책국전파이용제도과장 이정구** 정보통신부 전파이용제도과장 이정구입니다.

아직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설치하고자 하는가요?

○**정보통신부전파방송정책국전파이용제도과장 이정구**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창선 위원** 학교에서요?

○**정보통신부전파방송정책국전파이용제도과장 이정구**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창선 위원** 글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부라든가 책임 있는 기관에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고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사용을 하자는 측과 사용하면 곤란하다 하는 입장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홍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네 분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한다든지 자유를 제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국민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공감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김충열 이사님이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80% 이상이 차단장치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수능 부정 직후라 막아야 된다는 쪽의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이와 관계없이 보통 때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나요?

○진술인 김충열 다른 시점에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진영 위원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요?

○진술인 김충열 예.

○진영 위원 그때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때이고 그것 외에 국민 정서나 여론을 한번 보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예 없으면……

○진술인 계경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이트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보통신부에 전자 무슨 공청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파차단장치에 관한 전자공청회를 2001년인가까지 실시했는데 아무 관심 없이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영 위원 좀더 자세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종 위원 강성종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윤식 상무님께서 차단장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지요?

○진술인 장윤식 차단장치는 사실 퀄리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조그마한 성냥갑 정도로 간편하고 싸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자가 가정이나 이런 데에 침입을 할 때, 요즘은 휴대전화가 긴급신호를 알리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방해전파를 쏘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요즘은 에스원이나 이런 보안시설에서 주로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보안시설에 방해전파

를 쏘으로써 그것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종 위원 기술적으로 악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진술인 장윤식 가능하지요.

○강성종 위원 그리고 긴급통화 차단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긴급통화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술인 장윤식 불가능하지요. 지금은 119를 다 이열하면 긴급으로 연락이 돼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차단장치가 설치돼 있으면 긴급신호를 발신해도 연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강성종 위원 차단장치가 잘못된다고 그러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어떤 긴급한 상황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진술인 장윤식 그러한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강성종 위원 아까 피해보상 말씀들을 하셨는데 차단장치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이 있나요?

○진술인 장윤식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파를 차단시키는 것들에 대해 아직 제도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누가 보상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종 위원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무선설비 기능에 장애를 주는, 무선통신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장윤식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설치한 사람, 그런 시설을 설치했거나 주도적으로 이용하게끔 한 사람이 피해를 보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종 위원 그러면 현행법상에서는 전파를 방해하고 차단하는 그쪽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앞으로 차단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법제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리고 사전고시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사전고시를 모르고 그쪽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 자신이 꼭 받아야 되는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가, 차단된 것을 모르고 그 안에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진술인 장윤식 법적인 것이라든가 피해에 대

해서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강성종 위원 피해가 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사전 고시를 해야 될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장윤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피해를 100%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차단장치가 전국 도처에 불법적으로 설치된다거나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방지를 하고 명확히 누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까?

○강성종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지된 상태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인지되지 못한 상태, 그 근처에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받아야 될 중요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표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전파자원을 이용해서 무선국을 설치하고 또 마찬가지로 전파차단을 위해서도 무선국을 설치해야 되나요?

○진술인 장윤식 그것이 제도화된다면 서비스를 위해서도 무선국 허가를 해야 되고 또 그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무선국 허가를 해야 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처리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강성종 위원 행정처리의 이중성이, 하나는 서비스를 위해서 무선국을 설치하고 또 하나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동일한 장소에 무선국을 또 설치하는 모순적인 중복투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술인 장윤식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종 위원 그리고 고지를 해서 무선통제를 한다고 하면 무선통제는 가능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대체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체수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술인 장윤식 무선통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성종 위원 무선에 대한 통제가 될 경우라면, 전파에 대한 통제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진술인 장윤식 전파에 대한 통제요…… 차단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지역의 통신을 차단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강성종 위원 거기에서 대체수단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통신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통신을 해야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는 통신을 못하게끔 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국민을 완전히 옹아매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체수단이 있어야지……

○진술인 장윤식 그러한 대체수단을 아직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강성종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더 충분히 토론이 되어야 되겠고 또 법제도화가 되기 전에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쭙 보고 질의한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고 또 그 피해나 그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보호되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보호가 아니라 법적인 규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규제라는 것은 도덕과 문화에 의해서 규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강제성을 갖고 하다 보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제도보다도 도덕과 예절과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 선행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강성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김석준 위원입니다.

본 공청회를 있게 한 법안을 제출한 당사자 위원입니다.

네 분 성실한 진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정보사회의 이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부작용을 줄이겠다라는 기본취지에는 다 동의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찬반의 입장에 서서 어느 한편에서만 자신들의 진술을 몰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계경문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면 “국제법적 문제점”에서 “제 외국(미국, 프랑스, 호주, EU)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프랑스는 이미 전파차단 설치 근거가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진술인 계경문**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현재 알고 계시기에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술인 계경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2004년 11월 13일자 자료에는 분명히 프랑스에서는 설치근거를 인정하고 있는……

○**진술인 계경문** 최근에 업데이트한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께 연락을 드려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 가운데 찬성의 입장에 있는 두 분은 차단하고 있는 사례로 프랑스를 들고 있고, 반대 입장에 계시는 게 교수님께서…… 사실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찬성하는 입장에서, 현재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차단에 따른 부작용, 100%라는 것은 없지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효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험적인 도입도 했는데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였고 시험 결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를 한국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김종현 교수님, 그리고 김충열 이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종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100%의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파차단장치의 출력의 제한이라든지 특정장소에서의 사용에 대한 기술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특정장소와 특정기간 동안에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은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타 무선통신서비스에 얼마나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파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어떠한 무선통신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또는 어떤 장비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석준 위원** 김충열 이사님.

○**진술인 김충열** 제 생각으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이고, 두 번째로는 설치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출력으로, 어떤 수량으로 해서 하느냐 하는 부분을 최적화한다면 부작용을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장상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필터를 좋은 부분을 쓴다든지……

일본의 경우는 현재 차단하는 대역이 총 4개 대역입니다. 그래서 실험국을 운용하는 장치가 총 4개 대역을 커버하는 데도 장치의 비용이 1대당 무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인데 그런 가격으로 공연장이나 극장에서 시설주가 그 비용을 대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상기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준 위원** 장윤식 상무님께 묻겠습니다.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대체로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까?

○**진술인 장윤식** 휴대폰 제조업체라 함은 단말기를 만드는……

○**김석준 위원** 예.

○**진술인 장윤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준 위원** 예를 들어서 수능 부정처럼 그것이 잘못 악용되면 제조업체는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수능 부정행위처럼 좋지 않은 목적에 악용될 경우에는, 잘 사용되면 좋은데 수능 부정이나 사회적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때는 그것까지를 해소하는 쪽에 앞장서야 되는 게 제조업체의 기본윤리이자 사회적 책임 아닙니까?

○**진술인 장윤식** 그게 제조업체의 책임인가는 제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시다마는 어떤 제품이든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고, 잘 쓰면 이기가 되지만 못 쓰면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쓰는가가 문제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석준 위원** 원래 휴대폰이 잘 활용되어야 되는데 수능 부정행위에 악용되니까 그 악용을 막기 위해서 오늘 이런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장윤식** 예.

○**김석준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계경문 교수

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파차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탐지봉을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일일이 검색하면서 시험감독을 하거든요. 이 경우와, 전파차단을 해서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차단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피해가 큼니까?

○**진술인 계경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로 한정해서는 탐지봉으로 일일이 검사하는 경우가 분명히 크다고 봅니다.

○**김석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다음 변재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변재일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파차단장치 문제는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냐, 헌법이나 기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설치 주체는 누구냐 이런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할 것입니다. 교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수능시험과 같은 특별장소에서 한시적 필요성은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공감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헌법상의 문제이고, 지금 계경문 교수께서는 IT관련 조항을 들었는데 IT관련 규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문제도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권, 사생활 보호권을 제한조치를 금지하는 법조항으로 해석했는데 오히려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 보호권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헌법조항도 이동통신의 차단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로 인해 헌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한다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만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연장이나 극장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차폐시설을 조건으로 해서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임

의로 설치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기술기준을 어떻게 정해 줄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무선국의 설치허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해서만 설치될 수 있어서 이것을 설치하는 지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과잉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불법은 어디까지나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의 문제로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의 대상이고 극복의 대상이지 이것을 막는 요인은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김종현 교수님, 현행법상으로는 차단장치의 제작 및 판매 그 자체가 불법입니까?

○**진술인 김종현** 지금은 불법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일부 나와 있는 시제품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인가요?

○**진술인 김종현** 일부 단속을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속적인 단속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현행법상에는 제작 자체가 금지다, 더군다나 ISDN 대역도 아니고 일반 이동통신서비스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갖고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전파연구소의 형식승인도 안 받고 그랬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봐야 된다, 그 제작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지요?

○**진술인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제작·유통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장윤식 상무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작·유통 자체를 불법화시켜 놔야지 제작 자체가 허용된다면 악용의 소지가 커진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장윤식** 예, 제작·유통·설치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제작을 할 때부터 설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제작을 허용해 준다면…… 지금 통신 감청장비 같은 경우도 제작 자체를 승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부터 유통·설치 전체를 허가 대상으로 해 버린다면 불법 사용의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상무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장윤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전파차단장치는 순기능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해당 구역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를 허가하는 것에도 반대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변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계경문 교수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행복추구권, 사생활 보호권 차원에서 차단장치를 설치했다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계경문** 저는 위원님 말씀하고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글썄요, 정 반대의견을 갖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공연장 같은 데서 내가 차분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권리를 휴대폰 벨소리로부터 침해당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행복추구권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시간에 휴대폰 벨소리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겠다 이런 것이 사생활 보호권, 행복추구권 아니냐 이렇게 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술인 계경문** 위원님 말씀이 그 특정장소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아가서……

○**변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김충열 이사가 물어 보고 싶은데요, 차단장치를 한 지역에서 SMS 문자메시지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술인 김충열** 불가능합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면 차단장치가 있는 데서 벗어나게 되면 문자메시지는 들어오겠지요?

○**진술인 김충열**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부재중통화 신호는 안 들어오겠지요?

○**진술인 김충열** 예, 안 들어옵니다.

○**변재일 위원** 그리고 현재 체제상 차단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나가도 부재중통화 신호는 안 들어오겠지요?

○**진술인 김충열** 통화차단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통화가 가능합니다.

○**변재일 위원** 차단지역에 있을 적에 들어왔던 전화 신호는 안 들어오겠지요?

○**진술인 김충열** 예, 안 들어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런 것은 부가서비스 같은 것으로 좀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또 하나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궁금한데요, 계경문 교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차단장치를 설치했을 때 통신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것하고 휴대폰의 휴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 그 지역에 차단장치를 설치해 갖고 통신을 제한하는 것과 그 지역에 휴대폰을 들고 오지 못하게 해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의 법적 차이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진술인 계경문**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 이 방에 차단장치를 설치하면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겠지요?

○**진술인 계경문** 예.

○**변재일 위원** 이 방에 들어올 때는 절대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이런 규정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까?

○**진술인 계경문** 법적인 문제와 사실적인 문제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적인 권력하고 법적인 권한에서……

○**변재일 위원** 사실상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많은 지역에서 휴대폰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충열 이사가 얘기한 영상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의 반입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반입을 금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이라고 보는데, 휴대폰 반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휴대폰의 휴대를 금지하고 있는 군부대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에 해당되는지……

○**진술인 계경문** 통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과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리자의 사실적인 권력 행사이고 헌법에서 얘기하는 통신의 자유는 국가와 개인의 문제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다면 어느 교회 같은 데서 전파차단장치를 달았다는 것은 관리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진술인 계경문** 그런 문제점까지도 이 법안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변재일 위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과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파차단장치의 설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 문제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무조건 맞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술인 계경문**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장소에서 특정 개인한테는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변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委員** 서상기 위원입니다.

공청회에서 진술하시는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관례를 보면 보통 네 분을 초청하면 두 분이 찬성하고 두 분이 반대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전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김 이사님이 혼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 분이 말씀해주셨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어느 정도 듣는 분들이 이해가 쉬운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보다 오늘 새롭게 느낀 것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경문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국제법까지 다 연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접근방법이랄까,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충열 이사님은 회사 차원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외부에 의뢰해서라도 검토하신 적이 없습니까?

○**진술인 김충열**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과거에 전파차단장치를 제조해서 합법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회사들도 벤처기업 성격의 소규모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여력은 없고 오로지 제품의 품질 향상과 합법화를 위해서 정부와 같이 노력했을 따름입니다.

○**徐相箕 委員**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자문을 하실 기회가 많으실 텐데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으셔서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게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법은, 사실상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마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고한다든지 이런 전례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정보통신 관련은 우리가 앞서가기 때문에 만들면 아마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법리 논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데 계 교수님 말고 학문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관련된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많습니까?

○**진술인 계경문** 현재 국내에 두세 분 정도 더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전공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유일하지만 실제로 이 분야에 오랫동안 정보통신부하고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분은 한두 분 더 계십니다.

○**徐相箕 委員** 앞으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 것 같고,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계경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徐相箕 委員**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요약해서 핵심 되고 키 되는 부분만 정리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하시기 때문에 과연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키 되는 부분만, 요점이라든지 핵심적인 것만 지적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은 틀림없고 앞으로도 역할이나 책임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 진술하신 분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열린우리당 유승희입니다.

먼저 김종헌 교수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파차단장치 설치라든지 운용에 따를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발제문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전파차단장치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파를 차단하기보다는 전파를 혼잡하게 만들거나 교란시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누설전파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도 지나치게 장시간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통상적인 통화 목적으로 전송, 수신되는 전파보다 더 강력한 전파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종현 그것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누설전파는 결국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생하는 출력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10mW 이하에서 소출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인체 영향에는 무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전자파 장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진술인 김종현 제가 전에도 휴대전화를 병원에서 쓸 수 있느냐,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 휴대전화는 제가 측정했던 의료기기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단지 무전기 같이 고출력, 4W 정도를 송출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파차단장치에서 송출되는 주파수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주파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에서는 그 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역 폭이라든지 필터링이라든지 하는 기준을 엄격히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계경문 교수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전파차단장치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상당히 수월하게 개진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수능시험 문제 때문에 이것이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휴대전화로 인한 소음은 건전한 시민의 상식에 맞길 사안이라고 하는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휴대전화 휴대 금지 등 감독관청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의 사용 등

을 거론하셨는데 이러한 대체수단 등을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따라서 전파차단장치 허용은 그런 측면에서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전파차단장치 설치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파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일종의 규제조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식이라면 어떤 사람을 이해관계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술인 계경문 설치 장소의 관리자가 허가 신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까 교회의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교인들이 그것을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교회에서 차단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제기가 되었을 경우에.

○진술인 계경문 순수 법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관리자는 목회자라든가 대표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국제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ITU 전파규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다른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계경문 저는 그 경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헌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기본권 침해 요소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면 헌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다른 가능한 대안은 없겠는지, 혹시 차단장치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역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별적인 인권침해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헌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안 되는 차원에서, 법리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다른 대안은 혹시 없는지, 연구해보셨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진술인 계경문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릅니다. 대안으로서 휴대폰을 자동으로 진동모드로 바꾸게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서 양쪽 대안이 됐었는데 SMS

라고 해서 문자메시지가 통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진동모드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장치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고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들어가면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자동으로 소리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진동으로 바꾸게 하는 기술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대안은 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아무튼 기본권 침해 요소는 있다가 말씀하시지요?

○**진술인 계경문** 예.

○**유승희 위원** 김충열 이사님께 여쭙어 보겠는데요, 활성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셨고, 1999년도에 차단장치실험국 운용에 참여하셨는데 그동안 제품개발 진행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전파차단장치 해외 도입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주셨는데 혹시 해외에 이런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충열** 1999년 후반기부터 중동이라든지 몇 개 국가에 1로트당 200여 대씩 소량으로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산업적인 수요기반이 없기 때문에 수출부문이 결국은 나중에 소실이 되고, 현재 수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제도적 기준에 보면 차단장치의 악의적 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설치 및 사용자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하는 정도로 부작용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기술인들의 경우에는 의견을 달리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까도 장비부분하고 설치의 시추에이션에 대한 최적화를 갖추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견해를 밝혀 주신 것 같은데 약간 불충분한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충열** 일단 설치 위치와 수량, 출력, 그리고 설치 현장의 구조, 벽이 어떤 형태냐 누설이 되는 창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고 사전에 허가 내지는 신고 개념으로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기술적 문제점이라든지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장윤식 상무님은 전파차단장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 그리고……

그런데 차단장치를 담뱃값 크기의 소형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제품이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그런 일은 있는지, 차단장치를 허용하게 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비용 발생이 염려되는데 비용 문제 말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장윤식** 이런 차단장치가 불법으로 유통된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독기관이 적발해 가지고 아마 철거를 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구요.

담뱃값 정도 크기로 제작하는 것은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 지역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구조환경을 잘 고려해서 최적화를 잘하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서울 지역의 예를 든다면 서울 지역에 대형기지국이 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 수험 지역이 약 100개 되는데 기지국 전파보다도 더 세계 이것을 발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100%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것은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 같은 데 설치를 해서 1년간 시험해 본 결과이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비싼 수백만원, 수천만 원짜리 필터를 써서 해도 그 누설전파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이 50개 있다, 50개를 갖다가 출력을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전파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기지국에서 오는 단말기가 받는 신호보다도 더 세계 쏘 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세계 쏘면 전파는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파를 100m 가다 스톱시키고 1km 가다 스톱시키는 기술이 나온다면 그것은 노벨상을 100개를 받아도 남을 만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유승희 위원** 불충분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봉** 다음은 류근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根燾 委員** 류근찬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주의 김충열 이사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까 변재일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다마는 전파차단기를 만드는 것이 불법이지요?

○진술인 김충열 예, 그렇습니다.

○柳根燾 委員 제가 알기로도 불법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통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예컨대 전기통신사업이나 전파법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 12월에 전파방해장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정부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주의 김 이사께서 여기에 나오신 것은 제가 알기로 전파차단장치 개발업체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술인 김충열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柳根燾 委員 그러면 대주가 전파차단장치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진술인 김충열 그것은 아니고요. 2002년 12월까지 정보통신부하고 같이 해서 이 제품의 합법화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을 계속 해 왔었는데 12월 말에 정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은 그냥 가지고 있고……

○柳根燾 委員 개발된 기술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거나 그것은 안 하는 것이지요?

○진술인 김충열 아닙니다. 완전히 스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柳根燾 委員 이것이 작년에 문제되었을 때 입법 부분도 우리 방에서 검토해 보다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기술방안별 장·단점 분석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통부에서 받아봤는데 자료를 소개해 보면, ‘첫 번째 전파방해장치를 수능시험일에 시험장에 설치하는 방안은 상용화 제품이 출시되어 즉시 설치·운영이 가능하나……’ 이런 쉐넨스가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어떤 제품을 보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부전파방송정책국전파이용제도과장 이정구 기술적으로 이미……

○柳根燾 委員 아니, “상용화 제품이 출시되어 즉시 설치·운영이 가능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정부 입장으로는 불법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상용화되어서 출시되는 제품을 그냥 유통되도록 알고도 내버려 두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갖게 하는 쉐넨스다 이것이에요. 정통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건을 작성하셨는지

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혹시 해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부전파방송정책국전파이용제도과장 이정구 정보통신부 전파이용제도과장입니다.

아까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밍(Jamming)기술 같은 게 이미 만들어져……

○柳根燾 委員 재밍이야 이해가 되지만……

○정보통신부전파방송정책국전파이용제도과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자체는 쇧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통부터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柳根燾 委員 시험장에, 예컨대 무슨 법 근거만 마련되면 다시는 핸드폰으로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른바 재밍을 할 수 있도록 시험장에 설치하는 방안은 즉각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용화 제품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통부가 형식승인이라든지 제조, 판매를 다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스스로 상용화 제품이 출시돼 있기 때문에 근거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다가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이상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 부분을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해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정보통신부전파방송정책국전파이용제도과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柳根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제품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술인 김충열 사실 그렇습니다.

○柳根燾 委員 두 분 두 분이, 어떤 분은 소극적인 찬성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적극적인 찬성 또 소극적인 반대, 적극 반대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실 진술만 들으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좀 여쭙 봐야 되겠네요.

광운대 김종현 교수께서는 기술적으로는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술인 김종현 예, 기술적으로 전파차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柳根燾 委員 그런데 부작용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요?

○진술인 김종현 예,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柳根燾 委員 이 자료의 결론을 보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자료에 최초

로 시험을 했던 게 1999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진술인 김종현 예.

○柳根粲 委員 1999년, 2001년, 2002년에는 전파 차단장치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능평가시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보면 “차단장치가 설치되는 건물의 구조와 재질에 따라서 전파차단장치로부터 누설전파 여부가 측정되었고, 전파가 누설될 경우 인근 외부지역의 통화가 차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예컨대 핀 포인트 방법으로 차단이 안 되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진술인 김종현 그렇습니다. 만약 이 방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했을 때 옆 복도라든지 또는 건물 밖에 있는 분들의 통화가 전파차단장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柳根粲 委員 그러니까 일단 누설이 돼서 필요 없는 사람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면 기술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 상무께서도 단언해서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김 교수께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기술이 돼 있다 그 말씀이네요.

예컨대 핀 포인트 방법으로 이 정도가 차단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가 차단되고 여기까지 더 차단이 된다 그러면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는 게 원하는 장소, 원하는 구역에 핀 포인트 방식으로 그것만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차단된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차단기술이냐 이거예요.

○진술인 김종현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어떤 특정 구역만 저희가 설계해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는 사실 없었습니다.

○柳根粲 委員 그렇지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다 끝나서……
김 교수님, 법적인 고찰은 정말 잘 봤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신 부분이 역력히 나와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 와서 네 분의 진술을 들어 보니까 입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하는 그것부터 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는 수능 같은 부정행위가 막아져야 되지만 지금 당장 기술수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좀 성급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장 상무께 여쭙겠는데, 단말기 쪽 분야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차단방법은 없다 하는 부분하고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부분하고 충돌이 돼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지요?

○진술인 장윤식 그것은 다른 쪽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단이라는 것은 수십 cm의 시멘트 벽이라든가 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고, 공연장이라든가 문이 없는 아주 특수한 지역에서는 그쪽만 서비스를 차단시킨다 그러면 적어도 누설전파가 복도 정도밖에 새어나가지 않아 가지고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서관이나 교실 같은 학교는 거의 오픈 공간 아닙니까? 전파 차폐를 위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교실만 차폐를 시키면 교실보다도 몇 배까지 나갑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柳根粲 委員 김 교수님, 장 상무님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진술인 김종현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기술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전파차단장치에서 나오는 신호는 잠음신호입니다. 저희가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신호는 공간상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손실 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듈레이션(Modulation)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나가지만 잠음신호는 프로퍼게이션(propagation)하는 감세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지국 신호가 이를 다 커버해야 된다는데 사실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파차단을 할 때 현재 이 공간에 휴대전화가 수신되는 신호전력만 덮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출력의 전파차단 장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柳根粲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 오늘 진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석 위원 열린우리당 서혜석입니다.

우선 법률 관계를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여쭙 보겠습니다.

우선 계 교수님이 진술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경우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권, 사생활 침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등 여러 가지 침해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 특히 김충열 이사님께서서는 통신자유권 같은 것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기본권이 아니라고 어디서 연구발표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계 교수님께서서는 아직도 전파차단장치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진술인 계경문** 예, 지금 제가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한 진술이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서해석 위원** 아직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행복추구권 이런 것은 약간 멀리 나간 것 같고, 통신의 자유권을 보면 헌법 18조를 인용하셨는데 18조는 통신의 비밀 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과연 전파차단이 통신의 비밀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링크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한 인용이신지 하는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충열 이사님께서 통신자유권이 헌법상 기본권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어떤 연구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연구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김충열**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법학자도 아니고 일반 산업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일본의 우정성에서 실험을 하게 된 동기가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공익의 자유와의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서해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벨린스를 맞춰서 결론을 냈다고 그러시는데 일본에서 그렇다고 해서 해석이 반드시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헌법상 권리의 침해 소지 여부는.

그리고 아까 변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단말기를 방해해서 전파차단을 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휴대폰을 갖고 들어올 때 ‘끄시오’ 하는 것

과 비교를 하시면서 그러면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실 때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초점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했는데 이게 누설됐을 경우에 바깥에 있는 애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통신권리를 제약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두 가지 예는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ITU 위반 문제를 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석준 위원님께서서는 프랑스에서는 이미 차단 근거법을 제정했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은 전파차단을 완전히 허용하는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프랑스 법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ITU 위반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부에서 주과수 대역을 할당할 경우에 원래는 이동통신용이나 고정업무용으로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용으로만 허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 교수님이 쓰신 취지로 봐서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전파차단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ITU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국가의 법으로서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하는 것이라 법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일런트(silent)하고 민간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ITU 위반 문제는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나요? 다시 말하면 법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해라 말라는 말이 없는데 민간업체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영화관 같은 데서 한다 이런 경우에도 ITU 위반이 되나요?

○**진술인 계경문** 위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의 자유권은 비밀유지만만이 아니라 소통까지도, 현대의 기본권 개념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입법을 말씀하셨는데, ECC라고 있습니다. 유럽공동체 전기통신연합체인데 거기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선국 자체는 우리나라 개별법에서는 정통부 허가

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속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해석 상으로는 정부에서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때 전파차단장치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ITU 위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으로 아무 말 없을 때……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한다는 근거법을 안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정부가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할 경우에는 ITU 위반 문제가 심도 있게 고찰돼야 된다고 보고요, 법이 아닐 때는 국내의 인폴스(enforce) 문제, 다시 말하면 법의 집행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틀리게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법은 없지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해서 영화관이나 교회 같은 데에 사용할 경우에 그 자체로도 ITU에 위반이 되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혹시 그 부분을 아직 연구를 안 하셨으면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술인 계경문**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서혜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 위원** 한나라당 심재엽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벤처·중소기업들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수능시험 부정 같은 공익의 침해에 대한 법적 장치가 과연 필요한가, 방법이 있는가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선 김종현 교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전파차단장치가 역기능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셨는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술인 김종현** 전에는 소음공해 문제로만 전파차단장치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심재엽 위원** 예를 들면 공연장 같은 데서 완벽하게 차단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진술인 김종현** 예, 맞습니다.

○**심재엽 위원** 장윤식 상무님께서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납이라든가 시

멘트 같은 장치가 돼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술인 장윤식** 전파차단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럴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를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진술인 장윤식** 시멘트 육면체, 납 육면체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심재엽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벤처기업들, IT기업들의 기술 개발·보호·육성 이런 차원에서 법에서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 보다는 제한적으로, 말하자면 수요자가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적인 허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장윤식** 이것이 재밍, 즉 전파방해기술이 아주 고도의 기술이고 또 IT적인……

○**심재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같이 역기능에 대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진술인 장윤식** 기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연장이라는 이런 것도 대체수단이 없을 때, 공연장에서 소리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파탐지기가 있어 가지고 전파탐지를 해 가지고 전화기가 켜져 있으면 자체를 시킵니다.

○**심재엽 위원** 어쨌든 장 상무께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차단장치가, 방음장치라든가가 잘돼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나 IT벤처기업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이 계 교수도 계시지만 치밀하게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따질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률적으로 막는다…… 좀더 고민해서 필요한 수요자에게는 사용 가능하고 거기 관련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들은 기술개발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부분적으로 제한도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계 교수님께 여쭙 보겠는데요, 많은 위험소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익과 사익의 충돌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수능 부정이라는 것은 내가 갖는 부정의 이익이 다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일단 저는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사한 법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나온 항공기운항안전법이라고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하면 기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말하자면 통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휴대전화를 켜므로써 자칫 위험이 닥치고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해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접근이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데다가 휴대를 금지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장에 휴대폰을 휴대했을 적에 벌금을 물린다거나 이러한 법조항을 넣었을 적에 이 자체도 위험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계경문** 좀 어려운 말씀이고,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휴대금지 입법은 관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전파 자체의 흐름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비상연락망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항공기가 추락 또는 항공기 통신에 지장을 주는 경우하고 수능 부정은 피해 발생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심재엽 위원** 그러니까 휴대폰을 못 쓰게 하는 항공기운항안전법도 말하자면 통신에 대한 자유 침해가 있는 것이고 또 공익 목적으로 수능시험장에 수험생들이 휴대폰을 소지 못 하게 하는 것도, 이 부정행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법에 휴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든지 법정신을 넣어서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든지, 이것이 어떤 위험 소지가 없다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단지 위험 소지 여부를 여쭙 보는 것입니다. 위험 소지가 없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휴대 금지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진술인 계경문** 휴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과 전파 흐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심재엽 위원** 하여튼 수능의 부정을 막기 위한 전파차단장치를 논하는 것인데 계 교수께서는 법을 전공하셨고 위험 소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통신비밀보호법상에 휴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위험 소지가 없다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법조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술인 계경문** 휴대 금지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심재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술인 계경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과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고요. 시설관리자 또는 업무하는 사람들의 업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휴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통신자유권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방어적인 권리이지 시설자나 관리자나 업무감독자의 휴대폰 휴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좀 다른 궤의 차원입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재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김석준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석준 위원** 공술인들의 공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빙성, 전문성 내지 신뢰성 차원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경문 교수님께서 외국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나요?

○**진술인 계경문** 예.

○**김석준 위원** 박사논문이 전파통신법제에 대한 연구이지요?

○**진술인 계경문**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 뒤에 혹시 외국에 가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진술인 계경문** 없었습니다.

○**김석준 위원** 제가 알기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학자들 도요.

○**진술인 계경문** 우리나라, 아니면 외국 말씀이십니까?

○**김석준 위원** 한국에 있는 학자들 가운데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외국에서 공부를 한 전문가들도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이 조금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질의가 얼마나 '전문가가 있느냐' 해서 답변이 '계 교수님 외에 한두 사람 더 있습니

다' 이 정도로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진술인 계경문 제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습시다마는 정보통신부의 법률 자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아는 분만 말씀드렸고요. 제가 혹시……

○김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적을 보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최근 5년에 화갑기념논문집, 박사논문집, 그다음에는 소속하신 국민대학 정보화법연구소의 논문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 외에 연구용역보고서가 몇 개 있고요. 혹시 정보법학회, 인터넷법학회, 사이버법학회 알고 계십니까?

○진술인 계경문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거기에 가입하셨습니까?

○진술인 계경문 정보법학회만 가입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인터넷법학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진술인 계경문 사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제 주된 타깃 또는 항상 관심분야가 전파통신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유통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김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활동은 연구논문을 가지고 학회지 발표, 국제적인 논문집…… 그다음에 국내에서 A급 B급 C급의 학술진흥재단 등급 알고 계시지요?

○진술인 계경문 예.

○김석준 위원 계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은 다 교내논문집이지요?

○진술인 계경문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학술진흥재단에서 별로 인정 안 받는 것 아닙니까? C급으로 인정받지요?

○진술인 계경문 예, 맞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원래 전문가들은 학회 활동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계경문 예.

○김석준 위원 그래서 아까 '계 교수님 외에 한 두 명 더 있습니다' 그 진술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진술인 계경문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가 IT기술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학의 어프로치하고는 조금 달라 가지고……

○김석준 위원 저도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학계의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은 조금 과한 진술이었

고요.

그다음에는 장윤식 상무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인이 이동통신서비스업체 대신 제조업체의 책임을 물었었는데 현재 제조업체는 이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업체가 지금 전파차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요?

○진술인 장윤식 제가 제조업체가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비스업체들이야 당연히 서비스 차단을 시키는 것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김석준 위원 그러면 제조업체가 공식적으로 반대는 안 하고 있지요?

○진술인 장윤식 제조업체라면 제가 말한 단말기 제조업체나 네트워크시스템 제조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제조업체들이 차단장치 설치를 찬성한다는 얘기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데 아까 진술에서는 제조업체들이 반대하느냐고 했더니 반대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시다. 그것을 제가 다시 잘못됐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은 현재 반대 입장이지요? 그렇습니까?

○진술인 장윤식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제조업체들의 찬성이나 반대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준 위원 아까 진술에서는 그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정정하는 의미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네 분의 여러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전파차단장치 관련 5개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바쁘신 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인터넷주소자원예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위원장 이해봉 의사일정 제3항 인터넷주소자원예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 두 번째 공청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주소 문제는 2004년 7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승희 의원께서 인터넷주소자원예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메인이름 등록 업무를 순수한 민간기구가 담당할 것인지, 또는 민간기구가 담당했을 때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양분돼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좀더 폭넓은 의견을 듣고 법률 개정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은 순서대로 좌측으로부터 서재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태제 (주)아이네임즈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수복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명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이상 소개해 드린 네 분의 전문가로부터 이 사안에 관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네 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요약해서 한 10분 정도로 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평소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

으실 때 소화를 시켜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하실 순서 역시 좌석 배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재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서재철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단장 서재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 1월 29일 법률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 시행된 인터넷주소자원예관한법률 개정안이 2004년 11월 18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의 쟁점사항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업무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소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보급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주소자원이 정보화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과 공공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주소 관리에 관한 과거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상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민간위탁 조항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동법의 제정 이후 법률이 요구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 7월 30일 법시행과 함께 인터넷주소자원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설립되었고 2004년 10월 8일에는 법률 제16조에 의해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4년 11월 3일에는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해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 인터넷주소의 종류별로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 망식별번호관리준칙 등이 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004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한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

획이 6월에 확정되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999년에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신인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kr 국가코드도메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 이미 국제적으로 실용화된 인터넷주소의 관리가 주된 업무였으나 인터넷진흥원은 법정 업무인 관련 정책개발, 기술개발 및 표준화, 국제협력 업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등 인터넷주소 관련 업무 전담 등 인터넷주소에 관련된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 수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정보센터는 민간기관으로 위탁 분리되었으나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법적인 근거를 가진 법정 위탁기관으로 성격이 변화되었고, 국가 인터넷주소 자원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비용 산정의 투명화 및 이용자 보호 등에서 공적인 책임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인 1998년도 .kr 도메인 등록건수는 2만 6000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 61만 개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도 IPv4 기준으로 800만 개에서 3000만 개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주소 관리를 민간위탁에서 법정 기관이 하는 것으로 관리체제를 바꿀만한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국제표준으로 정해진 인터넷 주소체계를 적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의 특정 정보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본 자료집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상의 특정 정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메인이름을 입력하고 이후 DN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편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자들의 관점에서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시스템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DNS에 자신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함으로써 각각의 비즈니스에 DNS를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의 작동원리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공적인 부분과 민간 비즈니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의 민간서비스를 보시면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인의 도메인 등록신청을 받아서 이를 일반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영역인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전달받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저희 인터넷진흥원입니다—DNS에 이를 기록하여 등록한 이후 일반 이용자인 국민들이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각국의 인터넷주소체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kr, 영국은 .uk, 일본은 .jp라는 최상위도메인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관련시설 및 자원은 국내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서 공공서비스적 기능을 가지게 되며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주소체계의 공정성에 관한 것은 2002년도 ITU 102 결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주소 자원은 국내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서 공공서비스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국내 인터넷주소의 관리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업무는 국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kr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DNS의 운영·관리 등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공적인 업무영역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예산 규모 124억 원 중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kr 도메인이름 등록,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예산규모는 95억 원으로 인터넷주소 관리업무 비중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신인 인터넷정보센터는 .kr 도메인 관리업무 중에서 단순·반복적인 등록업무 즉 도메인 등록신청자에 대한 민간서비스 영역은 이미 2002년 8월에 민간으로 이전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에게 이전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의 민영화는 이미 법 시행 이전에 도입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제도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분리하여 타 기관 및 단체에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적 인터넷주소 관리체제상 ICANN 등 국제기구에서의 정책결정과정에 각 국가의 국가코드도메인들 예를 들어서 .kr, .jp, .cn 등이 주된 의사결정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익을 중시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이 선정된 도메인 이름 등 관리기관이 우리나라의 이익 및 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들고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서 일관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현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정책결정 및 관리체제를 감독하는 정보통신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민간·정부·학계·산업계 의사를 반영하여 심의하는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인터넷진흥원의 3원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새로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러한 역할 분담이 공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동법이 대상으로 삼는 인터넷주소에는 .kr 도메인이름 외에도 인터넷 운용에 핵심적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및 전화번호 체계를 이용한 E-NUM서비스 등 새로운 인터넷주소 체계가 포함되어 이러한 각종 인터넷주소의 관리는 일원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상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기술상으로 상당히 어렵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책임소재 및 신속한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의 낭비 및 절차 지연이 우려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간기업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선정되면 인터넷주소의 공공적 관리보다는 수익증대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인터넷 대란과 같은 예

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 DNS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의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영리업무는 .kr 등록대행에 대해서 이미 2002년에 분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주소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유지가 바람직하며 다만 새로이 도입되는 인터넷주소체계의 경우에 필요성이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이미 마련된 위탁조항에 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서재철, 발표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제 아이네임즈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태제** 먼저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실제 한국의 인터넷도메인을 총괄하는 KR도메인 공인기업협회 회장으로서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2004년 7월 30일 발효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법인으로 확대 개편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 할당에서부터 인터넷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인터넷 관련산업 활성화 지원 등 우리나라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법 제도화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론과정을 거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있어서 정부 주도의 인터넷주소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 정부의 인터넷주소관리의 적정성 여부, 인터넷주소관리정책 수립과정의 민간의 역할 감소문제 및 과도한 규제에 의한 민간의 인터넷주소 활용 위축 우려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정부 주도의 인터넷주소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이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인터넷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통한 상호보완체계 수립 등을 골자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법정기구화,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안정시책에 대한 조율 등을 골자로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 놓여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시금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가 지불하는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수수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공적 업무 예산과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민간수수료가 준조세처럼 이용될 위험성이 있으며, 공공적 업무와 영리적 업무가 혼재되어 집행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과 비효율의 증가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 중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정책적 공익사항에 따른 집행과 민간의 효율적 운영관리 분야의 영역적 정립 부재, 기관의 예산운영 및 집행과정의 불합리성 등이 잠재되어 그간 수차례 논의의 과정들이 반복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법 개정 이전 민간 재단법인으로 민간에서 위탁 운영되었던 시절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도메인 등 등록수수료의 전용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법정법인이 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설립된 지금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인터넷진흥원의 기관운영비인 예산의 대부분이 인터넷주소자원의 등록관리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야기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05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별 예산 및 재원을 보면 정부 지원은 전체 예산 148억여 원 중 15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합니다. 직접적인 정부예산은 전무합니다.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국내외 활동, 기술개발, 표준제정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인건비, 인터넷진흥원은 정통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준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비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기관 운영 관련 비용을 포함한 일반예산과 정책개발 등의 사업추진예산의 분리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의 운영과 지원에 있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고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 기술개발, 표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 폭을 확대해서 현재의

준조세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준조세화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주소자원별로 수입 및 지출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 결과에 따른 경영 공시 등을 통해서 등록비의 준조세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한 향후 새로 개발될 해당 인터넷주소에 대해서도 정책적 업무를 정확히 분석하여 등록자가 지불한 등록비 혜택이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자 및 사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 그리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적 업무와 영리적 업무가 혼재되어 집행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과 비효율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 중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이 있어서는 공적 업무와 영리적 업무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많으므로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정책업무와 운영업무를 각종 연구, 조사, 실사 등을 통해서 명확히 구분하여 정부는 원활한 인터넷주소관리를 위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입안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은 인터넷주소관리의 기능 강화로 인터넷주소자원이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정책과 운영의 양대 기능이 보다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에 있어서 핵심 경쟁우위 요소들은 정부의 지원이 해당 기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참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에서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그간 정책적 추진사항 등이 해당 업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 차원의 안정성과 공익성이라는 정책적 대의를 바탕으로 권한적 기능확대를 계속하여 왔으나 민간 자율에 의한 효율적 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산하기관의 자기 몸 불리기식 정책권한의 확대는 현재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따른 주소자원관리의 기능적인 운영 및 기술개발 등의 운영관리상의 정책적인 조정사항에 있어서의 역할 정립을 그간 방치해 왔으며, 또한 한국이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주소자원관리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의 해당 업계가 거대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자원 및 채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 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또다시 이러한 정책적 입장만을 견지한 권한 강화 측면만 몰입한다면 해당 업계가 기술력과 운영관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도외시되어서 글로벌 성장기업으로서 성장을 하지 못함으로써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업계들의 성장을 또다시 방치하며 업계의 사회공익적인 측면보다는 이익집단으로 폄하하는 정책적 모순을 또다시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체계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기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메인, IP주소로 대변되는 인터넷주소자원과 향후 만들어질 새로운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현재의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대한 보완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의 인터넷주소자원을 둘러싼 법체계와 운영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인터넷주소등록시장의 정체, 해외 도메인에 비해 떨어지는 .kr도메인의 인지도 및 경쟁력 약화, 사실인터넷주소서비스 등으로 인한 고객의 혼란과 폐해 등의 부분에 대해 인터넷주소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논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1년도 되지 않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비용과 혼란이 자칫 예기치 못한 큰 혼란과 정책상의 정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에 현행 법률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예산의 전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구분 운영에 대한 시장적·현실적인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충분한 연구결과와 논의를 거쳐서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수복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 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수복 저는 주로 인터넷등록기관의 업무 중에서 프라이버시나 보안 측면에서 우리가 이전의 토론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기술적 관점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등록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업무로서의 WHOIS 정보나 도메인네임서버에 대한 질의, IP주소에 대한 역질의, 그리고 위기대응체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어떠한 기술적 위험성이 민영화에 내포되어 있는지를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연설문 형태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문단마다 간단히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1 WHOIS서비스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P주소라는 것은 NIDA를 통해서 기관과 회사, 정부기관, 개인들한테 나누어지는 것인데 WHOIS정보에는 그 IP주소를 누가, 어느 장소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쓰고 있는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은 국가기관이 쓰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문제와 관련이 될 것이고 개인의 경우는 회사 차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이나 사법 관련 주요기관들은 IP주소를 숨겨 달라고,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애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NIDA에 기록이 남지만 외부에는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기관의 업무 중에서 그런 보안 측면의 업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에 .kr네임서버의 운영과 보안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우리가 웹 서핑을 하든지 이메일을 보낼 때 .kr네임서버에는 관련된 수·발신과 관련된 트래픽(traffic)의 개략적인 정보가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록기관이라고 하면 돈을 내고 도메인의 등록을 받고 또 매년 수수료를 내고 하는 영리적인 업무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이 보는 등록기관의 외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수수료를 받고 등록기관이 하고 있는 업무는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kr네임서버와 같이 .kr을 쓰는 웹 트래픽이나 이메일

트래픽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흐르고 있는 서버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수준의 기밀 유지와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민영화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보안문제나 책임문제, 또 국가의 기밀이나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co.kr’이 대부분의 도메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만 ‘.mil.kr’을 가진 국방부나 ‘.go.kr’의 정부, 그다음에 ‘.or.kr’ 같이 정부 산하기관들이 많이 쓰는 도메인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러한 트래픽 정보들을 민간인에 의해서, 정부의 관리 바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개런티(guarantee)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국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보안 측면의 개런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민영화를 하더라도 한번 더 심각하게 여러 가지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3 IP주소에 대한 역질의 서버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2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때,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A라는 회사에서 국회에 있는 ‘.go.kr’로 메일을 보내게 되면 그 메일을 주고받은 정보들이 .kr네임서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일을 보내고 받으면 제3자가 이것을 보내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보이지 않게 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KRNIC에서, 특히 NIDA에서 운영하고 있는 .kr네임서버에는 이러한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 같은 경우는 민간 회사에서 도메인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니다. 또 기밀사항 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보내고 받을 정도로 인터넷에 대한 신뢰도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mil.kr’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대를 포함해서 정부 주요기관, 또 국회…… 국회도 이런 진술서를 보내고 받을 때 저희가 국회로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런 메일을 보내고 받은 정보들이 사실은 개략적이기는 하지만 KRNIC에 다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등록기관의 업무가 실제로 뒤에 숨어 있는 보안 측면의 고려들을 해야만 등록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보안이나 또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메일이나 웹 트래픽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가 집중되는 등록기관 업무의 특성을 우리가 민영화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4에 보면 외부공격에 대한 .kr네임서버의 위기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나 사이버전 측면에서, .kr네임서버는 국가위기대응체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발행한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안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운영하는 루트서버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버들을 열거한다면 분명히 국내 NIDA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의 네임서버를 들 것입니다. 루트서버가 다운이 되면 전 세계 인터넷이 다운됩니다. .kr네임서버가 다운되면 우리나라 내부의 인터넷이 다운되게 되지요. 그래서 사이버전이 발생했을 때 공격대상 1위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NIDA의 서버입니다.

그래서 등록기관의 업무 중에는 NIDA의 7개 서버에 대해서 위기 대응을 잘 해야 될 의무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등록기관의 업무를 그냥 돈을 받고 도메인을 등록해 주는 업무로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록기관에는 이러한 서버를 운영하는 업무까지 들어가 있지요. 돈을 받고 운영비를 보충하면서 이런 업무를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과 장비와 시설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루트서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방부에서 또는 상무성 주도하에 매우 철저하게 보안 측면의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서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루트서버 관리권한에 대한 도전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굉장히 성가시게 생각을 하지요.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는 루트서버에 대한 국가안보적 측면의 고려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측면에서 등록기관의 민영화를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NIDA에서는 앞으로 3개년 동안 국내 DNS의 위기 대응체제에 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이버공격이 있을 때 민·관이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며, 또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백업서버를 구축할 것인지 이러한 고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관·군 협조체제 안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대량의 공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회선을 증설한다든지 백업서버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간회사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회사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해야 되고 대규모 투자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압박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고 또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기 대응 측면에 있어서 민영화가 좋은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번 향후 국내 인터넷주소체계가 직면한 다른 보안 이슈들은 현재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3.1에는 IPSEC이나 DNSSEC의 도입과 사이버보안 주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요점만 말씀드리면 현재 인터넷 DNS 체계라는 것은 미국 국방성에서 연구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연구원끼리 폐쇄적인 네트워크화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과 연구자료를 또는 연구결과 자료를 정부와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 측면에서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DNS 체계의 허점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IETF 등을 중심으로 해서 IPSEC이나 DNSSEC 같이 인터넷의 보안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용은 미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체계가 보안 측면에 있어서 강화될 때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한다 해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차세대 주소체계 같은 경우는 현재의 DNS 체계는 중앙집중식입니다. 인터넷 사용 정보가 중앙에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분산시키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시키려는 기술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여러 곳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등록비의 인하 등을 포함한 여타 이슈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러한 점들은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명구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강명구 안녕하십니까?

외국 학자들의 이력서에 보면 국회청문회에 나가서 테스트imoni 했다는 것이 이력서에 올라가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이 영예로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구요.

저는 법안의 찬성 쪽인데 이것이 이슈가 복잡하거든요. 골치가 아프실 텐데 가능하면 쉽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발전된 과정을 보면 .kr이라는 것이 한글 도메인이고 .com은 글로벌 도메인인데 처음에 존 포스텔이 이 주소체계를 만들었을 때 실험실에서 이렇게 인터넷이 커질 줄 몰랐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 현재 KAIST의 전길남 교수한테 .kr 운영을 맡긴 것입니다. 그때 나라를 맡긴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20년밖에 안 된 것이지요. 그리고 닷컴이 몇 천만개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회사가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 했지요. 20년 안에 이렇게 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버넌스의 문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제도가 외국에서 확정된 것들을 좋은 것을 받아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외국도 막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거기다가 갑자기 강국이 되어서 뭔가 선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kr의 루트서버의 운영과 관리 그다음에 레지스트리라는 것을 NIDA가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개정안이 나온 것처럼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슈는 주소자원은 공적자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적자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된다는 전제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과, 그것은 위탁해도 가능한 것이지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비영리민간기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국가가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글로벌스탠더드에 안 맞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 강국은 틀림 없는데 강국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어야 되고, 이것은 책임성 문제지요. 또 하나는 세계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운영관리 측면에서 글로벌스탠더드하고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부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스탠더드하고 어딘가 어긋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면 반드시 민간이 주도했다라고 해서 시장이나 기업이 주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정부는 책임이 있고 민간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전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관련된 거버넌스의 구조는 결국 정부, 시장, 시민사회 그다음에 인터넷의 경우는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이 네 부분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협치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제이고 주소자원은 그 일부분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터넷 거버넌스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써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한국의 역할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강국으로서 세계 사회에 한국의 인터넷 주소자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역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장단점은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 강국으로서 한국

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련해서 혹은 인터넷 기술이건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에 대해서건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 주도로 다 이루어질 경우에는 발 빠르게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그러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정부는 뭘 해야 되겠느냐 규제자가 아닌 조율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떤 제도를 허가제로 하느냐 아니면 등록제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등록제가 반드시 무책임한 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소자원뿐만 아니라 현재도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이 보안과 감시, 정보 추적, 상호연결, 지적재산권, e-commerce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확장되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겠느냐 할 때 현재 법안은 전부 정보통신부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맞다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에 제가 1996년 인터넷정보센터 초기에 만들어질 때 기구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다가 정부기구가 되면서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통부가 굉장히 좋은 정책을 했는데 주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늘들이 사실은 IT, CT 산업의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 NIDA 안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터넷 강국으로서 글로벌스탠더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것을 관료사회가 하다 보면 역시 안전한 중심으로 간다 하는 것이지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혁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거기에 못 미친다 그런 뜻이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법안 내용대로 1차 단계는 현재 법안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루트서버와 주소자원을 관리하는 레지스트리를 민간으로 떼어내면 거기에 그전에

있었던 주소자원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책이나 스탠더드 메이킹의 프로세스를 NIDA가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 법안이 미흡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그것은 역시 이전에 KRNIC이 가지고 있었던 주소자원위원회 같은 형태를 별도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소자원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세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인터넷 거버넌스가 대단히 큰 문제로 확장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주소자원의 관리 운영을 민간화 시키는 것은 방향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강명구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으로부터 오늘 공청회 관련된 법률에 관해서 상세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7분 이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김석준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이슈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예산 자체를 수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총예산 157억 중에서 84억 원 정도 즉 53% 정도가 도메인등록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민간부문에서 인터넷주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이태리와 한국이 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서재철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예산 자체가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원래 정책개발, 기술개발, 표준화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심지어는 단순히 등록기관에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서재철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제는 과거 인터넷정보센터 시절보다는 풀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좀더 표준화, 연구개발, 신기술에 대한

도입, 연구부분이 미약한데 나름대로 주소 관련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Pv6 부분 또 이넘(E-NUM)이 확장되어서 센서 쪽으로, USN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연구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지난번 2004년 8월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출범에 즈음한 7개 시민단체공동선언,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kr 도메인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공정경쟁을 실현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진술인 서재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키워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준 위원 7개 시민사회단체성명서 .kr 도메인 공급가격을 낮추라는 얘가지요. 현재 우리가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만 2000원 정도 등록수수료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좀 낮추어라, 현재 인터넷진흥원 예산도 53%씩이나 거의 준조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서재철 아시다시피 그 얘기는 현재까지 계속 들어 왔고 닷컴의 경우에는 6불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데……

○김석준 위원 6불이면 6000원 정도인데 그러면 4배가 넘지요?

○진술인 서재철 아닙니다. 그것은 ccTLD는 다르고 지금 김석준 위원님이 닷넷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닷넷 같은 경우에는 450만개, 500만개, 닷컴의 경우에는 3500만개가 넘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높지 않다……

○진술인 서재철 OECD 부분에서는 저희가 중상위 정도 됩니다.

○김석준 위원 만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인터넷주소를 민간부문에 보내면 원래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통부 실·국이 담당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진술인 서재철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 면을 하게 되어 있고……

○김석준 위원 굳이 진흥원 자체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업무는 정부 실·국

으로 보내고 관리는 민간으로 보내고 그런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서재철** 과거에 인터넷정보센터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과거 인터넷정보센터의 규모, 하는 일들에 대한 평선이 지금 풀은 법제화 되었다시피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김석준 위원** 법제화 이후에 달라진 내용이 많습니까?

○**진술인 서재철** 주소관리 기관만 따로 떼어내는 경우 그 부분이 저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김석준 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으로 있을 때와 진흥원으로 만들었을 때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실제 일반 국민들이 보아서 큰 차이가 뭐지요?

○**진술인 서재철** 일반 국민들이 보서는 큰 차이는 없고 좀더 든든하고 국제활동이나 안정적인 서비스에서 오히려 신뢰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신도 자부심이나 현재 형태가 여러가지로 위상의 도약이라고 얘기하지 민간형태니까 어떻다 하는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보면 민간에게 인터넷주소관리를 분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진술인 서재철** 저희 같은 나라가 선도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주소자원에 관한 법을 만든 자체도 ITU 왔을 때 설명드리고 이 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난번 1·25 대란 때 F-루트와 J-루트를 가져왔고 닷컴과 닷넷 루트서버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었을 때 이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저희가 모델적인 KRNIC으로 기타 국가에서는 실사해 가고 있고……

○**김석준 위원** 다른 OECD 국가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까?

○**진술인 서재철** 저희 모델이 굉장히 잘된 형태로 되어서 이 법의 영문판을 많이 요구하고 제가 그것을 설명하고 또 저 혼자만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을 통해 각국에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수복 위원께 묻겠습니다.

39페이지에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을 제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시지요.

○**진술인 이수복** 보안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석준 위원** 해야 될 내용들……

○**진술인 이수복** 대안 내용이요?

○**김석준 위원** 예.

○**진술인 이수복** 차세대 주소체계에 대한 대안이요?

현재 주소체계는 일단 1970년대 만들어진 TCP/IP라는 프로토콜에 기반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연구기관 내부 또는……

○**김석준 위원** 그 점이 아니라, ‘민영화를 한다 해도 사이버 안보나 안보 주권에 관련된 기술의 사용이나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산하 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

○**진술인 이수복** 이것은 미래에 발생할 이슈입니다. 향후 발생할 이슈들입니다. 아직 IPSEC이나 DNSSEC은 표준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NIDA의 차후 3개년계획 안에 DNSSEC의 시범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도입이 될 것인데 여기에 이러한 국가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지요.

○**김석준 위원** 마지막으로 강명구 교수께 묻겠습니다.

아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정통부 주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들이 생길 것이라 하고 함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들들이지요?

○**진술인 강명구** 주소자원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닷넷(.net), 닷인포(.info) 이런 새로운 TL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비딩을 하는 국내업체들이 있어야 되지요. 레지스트리(Registry)를 운영할 수 있는. 지난번에 닷넷도 하기는 했었는데, 진흥원이 이니사이트(initiate)해서 민간기구가 하기는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통부가 A나 B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민간의 A, B 회사 중 어느 회사가 되고 어느 회사가 안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요. 표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는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표준을 빌려다 쓰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민간들이 자연스럽게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 훈련이 안 되고 정통부,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기업들은 정부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를 바라보고 있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훈련들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단 말이지요.

○**김석준 위원** 현재 정통부가 WiBro 이런 것을 하면서 세계적인 표준을 한국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인터넷진흥원도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 한국이 표준화를 파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술인 강명구** 글로벌스탠더드의 경우에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표준의 경우에는 IETF가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다 엔지니어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A, B, C의 표준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테스트하고 테스트해서 합의를 봐서 스탠더드로 채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정부가 만든다고 하면 어떤 기술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뭔가,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니라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김석준 위원** 서재철 진술인, 만일 진흥원에서 표준화 연구를 계속하고 정책연구를 하면 WiBro나 다른 표준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듯이 우리가 인터넷주소시장에서 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술인 서재철** 저는 IETF라든지 ICANN 모임 등에서 기술력에는 우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영어입니다. 그것을 표현을 못 했을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IPv4, IPv6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데 그것을 팔로우업해 가고, 그것을 표현해 가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엔지니어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표현하고 채택하는 커뮤니티요. 그래서 ICANN이나 IETF 같은 것, 지난번에 한국에서 59차 IETF를 유치했는데 그 부분에서 주로 위원회에 올라가는 노력들이 됩니다. 그것의 채택을 위해서는 기술력 플러스 거버넌스, 커뮤니티에 대한 동조가 필요한데…… 일단 따라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석준 위원** 그 점에서 민간보다 정부가 더 우월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까?

○**진술인 서재철** 그것은 저희가 활동은 계속하

고 있고, 정부보다도 커뮤니티에의 참여가 더 중요하고, 특히 IETF의 표준을 결정할 경우에는 ETRI 같은 경우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채택이 되었고……

○**김석준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강 교수님, 법안을 몇 가지 보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완할 내용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술인 강명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위탁만 해서 루트서버와 주소자원관리를, MUSEs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RFC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 레벨에서 유치원 도메인을 별도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를 합의를 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합의를 보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개정안에는 NIDA에 속해 있는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저기서 하니까 그것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 역시 운영이 민간화되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향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 제안자인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열린우리당 유승희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오늘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해봉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인터넷주소 관련 기업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사안에 관여해 온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여러 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이 16대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결은 여러 법안에 묻히다 시피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법안을 이 업무를 담당했던 정통부의 사무관이 넘으로써 정통부는 산하기관이 하나 더 생기고 그 이후에 담당 사무관이 계속 바뀔 때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논의의 내용으로는 철학적인 깊이나 정책적인 깊이, 아까 강명구 교수님께서 훌륭한 공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마는 정부의 역할이 뭐

냐?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통제나 규제가 아닌 자율을 더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주소자원에만한법률안이 16대에 제정되어서 통과되었는데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라고 해서 잘 통과가 되었지요. 어떻게 정부 산하기관을 만드는데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정통부가 국회를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태제 공술인께서 좋은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자료에 보면 정부가 예산 지원 폭을 확대해서 현재의 준조세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라고 통과된 이 제정의 출발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와 진흥원은 인터넷주소가 공공자원이냐, 그래서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국통신이 KT로 민영화되었습니다. 주파수는 공공자원입니다. 국가가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주파수 관련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한국통신은 결국은 민영화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관리했던 모든 업무가 어떤 측면에서는 민간섹터로 이양된 것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인터넷주소 관련해서는 민간이 잘 운영하던 것을 국가가 결국은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에서 나온 기형적인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주소는 이미 100억 규모의 산업입니다. 미국도메인 관련 회사인 베리사인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의 인터넷주소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운영능력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최근의 한류 열풍을 타고 글로벌기업으로 키우는 등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민간이 오히려 잘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산업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kr 도메인등록 수수료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등록대행사업자 간에 7 대 3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이 7을 가져가고 등록대행사업자가, 레지스트라지요. 3을 가져

갑니다. 심지어 도메인등록자의 이체수수료까지 이 3에 포함시키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핵심인력들이 줄줄이 퇴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강국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부 산하기관이 스스로 산업을 죽이고 있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정통부라는 지주,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마름이 있고 업체들은 소작농이나 다름 바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술인들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제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제정된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을 보면 .kr 도메인등록대행사업자의 계약유효기한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태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서재철 센터장님, 업체들 줄 세우기 아닙니까?

○진술인 서재철 하여튼 저희 비유를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 올리건대 금년도에 저희가 올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등록업체를 줄 세우기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격요건이 되면 열릴 예정입니다.

○유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 이러한 규제장치를 통해서 업체들을 옹아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개정안을 냈는데 의견을 말하기 위해 찾아오는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술인 서재철 인터넷정보센터부터 인터넷진흥원으로 바뀌는 사이에 업체의 변동도 없었고 또 실제 만날 일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업체 사장님도 연초에 한 번 뵈고 중간에 별로 볼 일이 없습니다.

○유승희 위원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만약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모독 아닙니까? 이 개정안은 과정위 위원님들 열세 분이 공동발의하신 것입니다. 정부 산하기관 간부

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인 서재철** 제가 감히…… 먼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최정희 씨는 1, 2년도 아니고 제가 인터넷정보센터에 다닐 시절 전부터 죽 대해 왔기 때문에 들이 문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패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패스에 대해 서로 앉아서 얘기 하던 끝에 나온 겁니다. 중간토막만 말씀 올리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분리되는 것 걱정이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간토막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국회 입법과정에 다 쓰여 있더라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인터넷상에 썼기 때문에 말씀 올렸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혀 위원님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유승희 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따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만 서재철 센터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공술하시는 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인용하셨습니까라는 중략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빼고 인용하셨습니까. 16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법정기관화하면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라는 사업까지 맡기게 되면 정책 등에 관련된 공공성과, 이 사업을 통해서 수수료를 얻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영리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대목을 중략으로 빼고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솔인 서재철** 그렇지 않고요, 인터넷정보센터에서 사업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분명히 상승이 되어 가지고 현재 상태 그대로, 과거 상태나 지금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입법을 하면서 조사관님께 16대 때 저희가 불러왔을 때도 말씀 올렸지만 예산을 국고에다 다 넣고 빼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산림에 들어갔을 때, 국립공원 입장료 같은 경우에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다 올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다 조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고 자율성도 나름대로 주면서 사업권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이행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 센터장님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흥원 총 인력이 몇 명이지요?

○**진솔인 서재철** 현재 정원은 79명입니다.

○**유승희 위원** 그중에 도메인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원은 몇 명이지요?

○**진솔인 서재철** 제가 조직 패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정보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명 정도 됩니다.

○**유승희 위원** 20명이면 충분하지요?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솔인 서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서창영 사장이 20억 얘기를 했을 때는 백(Back)단에 대한 얘기, 대외협력에 대한 얘기, 관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유승희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여 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솔인 서재철** 과거 인터넷정보센터 시절에도……

○**유승희 위원** 2월에 의원실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20명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진솔인 서재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일본과 영국을 예로 들면서 민간 위탁하면 ICANN 등 국제기구의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일본은 JPRS라고 하는 민간회사, 그리고 영국은 NominetUK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이 국가코드 도메인 이름 관리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례를 너무 엉터리로 드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솔인 서재철** 아닙니다. Nominet 같은 경우도 직원이 300명이 넘고, JPRS도 70명이 넘고 JPnet도 몇십 명이 됩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가 늘리고 싶어도 많이 못 늘렸습니다.

○**유승희 위원** 반론을 제기할 게 참 많은데 상세한 질의는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수복 공술인께도 질의할 게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어느 특정 국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IT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사회의 안전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서재철 단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서재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주소자원은 공공재이고 그것이 공공성을 가진 자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그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번호자원과 같이, 주파수도 물론 그렇고 전화번호도 그렇고 집주소도 마찬가지지요. 국가가 관리하면서 체계적인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초창기 인터넷주소자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 인터넷 하는 사람 몇몇이 쓰고 할 때는 사적 자원이었지만 이제는 공공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서 관리돼야 된다, 이것까지는 별 이견이 없지요?

○**진술인 서재철** 예.

○**변재일 위원** ccTLD 말고 gTLD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출발선부터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상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상무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서재철** 그것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ICANN 미팅을 가시면 미국의 상무성뿐만 아니라 법무성도 오고 또 각국 정부의 입장이 옵니다. GAC이라고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가 있습니다. 지난 마르텔플라타 미팅에 저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진흥원 및 이창호 사장님과 같이 갔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인원이 상무성뿐만 아니라 법무성 또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미국 공무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도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변재일 위원** 그렇다면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gTLD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몇 개 국가가 국가 주도로 운영하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LD 도메인 네임이 사실상 미국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진술인 서재철** 예, 저는 단언합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ccTLD에 관한 것도 이제는 인터 거버넌탈 오거나이제이션(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가야 되고 gTLD에 관한 것도 이제는 ICANN보다는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가 가지고 유엔이나 유엔 산하기구 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진술인 서재철** IT의 입장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미국 정부 입장은 희석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돈을 거둬들이는 90% 정도가 베리사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입장을 빼려고 미국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정부가 좀더 관여를 하면서 양쪽의 중용을 취하는 정책을 펴게끔……

○**변재일 위원** 그리고 현재 gTLD 같은 경우에도 gTLD를 개발하고 운영해 가지고 얻는 수익이 개별 기업한테 가기보다는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수익을 내 가지고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든지 통신망이 보급되지 않은 저개발국을 위해서 지원돼야 된다, 어떤 개별 기업의 수익이 되기보다는 공익적 목적에 사용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서재철** ITU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아웃리치(outreach)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외국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도 과거 인터넷정보센터 시절부터 계속 활동을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CANN과 미 상무성·국무성 쪽에 전부 다 MOU가 체결되어 있어 가지고 한 사람 인력 파견도 거기에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 법 관련해서 왔을 때도 미 상무성 쪽에 얘기를 해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는 어떠한 식으로도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정책기관과 관리기관과의 구분 문제에 대해서 지금 IPv4를 적용하고 있다가 IPv6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지요?

○**진술인 서재철** 예, IPv4를 IPv6로 가고 있고 v6에 대한 주소 확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v6에 대한 주소 확보를 하고 v4에 대한 주소 확보도 해 나가고 있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v6와 v4의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속에서 v6와 v4가 공존시대를 거쳐서 v6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진행을 담당하는 기관하고 단순히 등록대행이 아니고 주소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서재철**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리고 KRNIC과 관련해서 KRNIC 당시에 KRNIC이 인터넷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서부터 위임받았습니까?

○**진술인 서재철** 정부의 위탁관리에 의해서 또는……

○**변재일 위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권을 KRNIC한테 위탁해서 KRNIC이 재단법인으로서 관리했던 것이지요?

○**진술인 서재철** 그렇습니다. 전에는 전산원의 형태로 했고 전산원에서 IMF 때 구조조정으로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나왔었습니다.

○**변재일 위원** 당초에 ICANN이나 IPNIC을 통해서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민간 위원들 간에 운영되던 것이 우리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정통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기 시작했고 정통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에 법적 관리 권한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권한을 KRNIC이라는 재단법인한테 위탁시켜서 관리해 온 형태였었다고 볼 수 있지요.

○**진술인 서재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인터넷주소자원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법정기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다만 주소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기능 이외에 단순히 등록을 시켜 나가면서 등록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만은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단 그런 체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술인 서재철** 이미 저희가 인터넷정보센터 시절에 5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했고 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약 6개월 정도 모델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금액을 책정해서 5개 사업자를 선정했고 현재 7개 사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우리가 정부 중심의 관리체제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미국 중심의 인터넷관리체제에 저항하고 있던 많은 나라에서 공감을 하면서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체제로 가자, 정부관리체제로 가자…… 이런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나 동향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서재철** ICANN 회의에 가면 ICANN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주로 미국 위주로 되어 있고 ICANN 회의에서도 각국의 입장이 있고 또 이 형태가 WSIS라는 형태로 유엔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유엔에 가보면 ITU 쪽에 국가 중심이 있고 ICANN 체제는 민간체제인데 거기에 정부 참가국이 중간에 끼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ITU와 미국 중심의 ICANN 체제와 계속 컨플리트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경우에는 일반 타국에서……

○**변재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야 합니다.

현재 ICANN 중심의 민간관리체제, 외형상 민간관리체제, 사실상 미국에 의한 관리체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인터넷주소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엄청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지요. IPv4의 경우예요. 미국의 특정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주소자원이 웬만한 개도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지……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체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ICANN 자체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권위가 존중되고 국가의 기능이 존중되는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좀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한국이 앞장서는 게 좋겠다, 특히 인터넷주소자원의 부족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중국 등과 협조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서재철** 중국에서는 6000만 개가 넘는 IP 주소를 썼습니다. 저희 때 처음에는 3000만 개밖에 안 썼는데 갑자기 2배로 뛰었고 지금 인터넷 인구가 전 세계 63억 정도 되는데 한 6억 이상이 쓰고 있고 올라가는 레이쇼(ratio)는 대단

히 높습니다. 그리고 43억 개 정도의 IPv4의 경우에는 70%를 소진했습니다. 리유즈(reuse)하고 스탠포드는 이번에 반납했지만 IBM 같은 데도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T 같은 경우에도 회원제로만 받았습니다. 이번에 체계를 바꾸면서 주소당 부과금으로 1개당 30원씩 체결했는데 이 형태의 꼴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많이 갖고 있으면 미국에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리유즈했으니까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태의 법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더 나아갈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IP 부분입니다.

○**변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v4가 이용되는 단계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IPv6로의 전환을 크게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v4주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IPv6의 관리체제는 가급적이면 유엔 산하기구라든지 국제기구에 의해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委員** 서상기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했는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김태제 진술인과 강명구 진술인에게 여쭙보겠습니다.

두 분은 본 개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시면서도 결론은 현실적인 토대가 마련되거나 큰 마찰이 없도록 하는 세부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시행 초기이니 시간을 좀더 갖고 연구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술인 김태제** 제 생각에는 학계와 필드에서 일어난 국민들 의견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사업자들의 의견, 그다음에 여러 다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추진을 하게 되면 지난 과거처럼 오류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강명구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강명구** 저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넷진흥원이 생겼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또 실제로 루트서버라는 것이 위탁을 하지만 안정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대단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법안에 무슨 단서를 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徐相箕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정부의 역할은 가능하면 축소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해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진 예는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통부하고 관련지어서는 저는 끊임없이 정통부의 국정사업 부분 중에서도 금융 부분, 특히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정리를 하고 정부가 손을 떼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교육 부분도 있습니다. ICU 같은 기관을 정부출연기관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정말 이 시대에 역행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든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척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 보겠습니다.

이수복 진술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든지 외부로부터 사이버상의 과상공격이 있을 때 .kr 네임서버라든지 주요 DNS 서버가 주 타깃이 되겠습니까?

○**진술인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리고 이 경우 .kr 도메인을 쓰는 웹 사이트와 이메일로의 통신이 전면 두절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수복** 24시간 이상 계속될 때 그렇습니다. 루트서버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徐相箕 委員**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관리업무를 국가나 민간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 이전에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단히 현실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수복** 예, 동의합니다.

○徐相箕 委員 작년에 중국발 해킹으로 국가기관 10여개가—불행히도 저희들 상임위하고 관련되는 기관이 많습시다—해킹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 있는 국회 디지털포럼에서 정부기관 3개를 모의해킹을 해 봤는데 2곳을 침투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혹시 신문지상에서 보셨나요?

○진술인 이수복 예, 봤습시다.

○徐相箕 委員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이버강국이라는 하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조차도 이렇게 허술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해외에서는 민간이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이수복 정보통신부에서 NIDA를 통해서 DNS 위기대응체제 또 모니터링체제를 포함한 대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NIDA가 진행한 앞으로 3개년 주소자원 안정화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참조하시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사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갑니다. 인터넷 초고속통신 보급률은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회사 또 정부기관들도 인터넷에 거의 올인을 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안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곳이 우리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중국발 해킹 문제도 있었지만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침투하게 국내 뉴스 기사를 장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그러한 사이버 공격의 주된 공격대상 또는 주된 공격시장 루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 보안 문제에 있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徐相箕 委員 보안 문제에 대해서 서재철 진술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수복 진술인께서 현재의 TCP/IP와 DNS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IPSEC이라든지 DNSSEC의 도입과 사이버 보안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 도입이 민간의 자유로 맡겨진 경우

에 시장논리에 의해서 종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부 규제를 받도록 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이버상의 보안은 실공간에서의 핵폭탄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진술인 서재철 예.

○徐相箕 委員 그래서 해킹을 당하면 사이버공간이 전면적으로 파괴되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핵폭탄은 보유할 수 없겠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그만큼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주권에 대해서 현재 진흥원에서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서재철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는 13개의 루트서버가 있습니다. 미국 상무성을 통해서 베리사인에서도 관리하고 여러 군데로 나뉘어서 관리하고 있는 13개의 루트서버가 있습니다. 실제 루트서버는 13개만 우선 한정적으로 쓰고 있지만 한국에도 J, F를 가져왔습니다. 그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1·25대란 이후에 가져왔습니다. .com과 .net도 13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추진해서 작년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리면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리절빙이라고 해서 .kr을 쓰는…… 이수복 위원이 쓰시는 것 보았는데 미국 쪽에 굉장히 많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일곱 번 정도 코리가 옵니다. 그 코리에 대한 확보도 데이콤에서는 산호세에 하나 있고 이번에 저희 원장님께서 미국 워싱턴DC에 갔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로 나뉘어서 .kr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말에는 부산 쪽으로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확보를 하고요.

아까 이수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해킹의 우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해킹의 화살이 온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방패로서는 나름대로 조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조치 부분은 히든마스터라고 해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 1000개의 PC를 모아서 7개의 서버를 쏘면 그게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백업하기 위한 장치로서 저희 본사 그다음에 KTID센터에서도 완벽한 백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확실히 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도메인 등록 받는 수수료가 아닌 백업 부분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徐相箕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 위원 한나라당 심재엽 위원입니다.

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야에서 공공재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 내지는 경영 합리화 이런 것을 위해서 민영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넷주소가 민간에 위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국가기간산업에 속하는 것인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서재철 선생님!

○진술인 서재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 형태로 했는데 왜 공공재로 됐을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요새는 IT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T는 국가대표들을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오타와대학의 가이스트 교수라고 한국에도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저희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쓰신 저서에서도 이미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27개국 47%입니다. 스페인, 핀란드와 같은 중소국가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 이유는 제가 벌써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IT가 비교적 선진국인데 관련 법 2조3항에 보면 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주소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처음 일정한 수준까지는 진흥원에서 관리하다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또는 가격 문제 등등, 말하자면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진술인 서재철 과거에도 저희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을 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고 현재도 거기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1년짜리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 조항도 기간을 없앨 예정입니다. 기간을 없애 가지고 일단 계약이 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미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기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장, 홍창선 간사와 사회교대)

○심재엽 위원 그래서 위탁기관 관리를 민간에 줘서 경쟁을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 등록관리 수수료가 1만 4000원인가 그렇지요?

○진술인 서재철 예.

○심재엽 위원 제가 지금 다른 나라 것을 죽 보니까 이태리 같은 데는 6700원, 미국이 5740원, 독일이 1810원으로 우리나라가 대단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독점체제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진술인 서재철 이것은 레지스트리(Registry)이기 때문에 DB는 운영이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은 숫자가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800만 개가 넘고 영국 같은 경우도 600만 개가 넘습니다. 저희는 좀 작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net, .com을 쓰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은 미국의 베리사인이라는 민간회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kr은 60만 개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것도 운영하고 민간 업체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되어 있고, 지금 법에 의한 E-NUM가 있습니다. 그 E-NUM체제 같은 차세대 주소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 뒀기 때문에……

○심재엽 위원 그런 논리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사업이……

○진술인 서재철 이것은 수수료 부분입니다.

○심재엽 위원 그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아까 강명구 교수께서는 공공재 성격으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법적 공공재라고 그러면 가격결정이 국무회의에까지 올라가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그런 성격의 공공재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강명구 제가 공공재라고 말씀 안 드리고 공공자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좁은 의미에서,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공공재하고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

터넷주소라는 것이 정책은 역시 정부 몫이라고 하더라도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라든가 서비스 차원에서는 민간업자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까?

○**진술인 서재철** 이미 되고 있고요, 저희가 1만 4000원 받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일반소비자가 등록하실 때는 2만 2000원을 내십니다.

○**심재엽 위원** 지금 등록대행 말고 위탁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진술인 서재철** 예,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여기에는 7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나와 있는게요? 실제로 지금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등록만 대행하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진술인 서재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만 4000원 받고 일반 업체는 2만 2000원을 받든지, 2만 7000원을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것을 이제는 민간업자한테 완전히 넘겨주고 진흥원에서는 정책적인 것을 수립하고 관리 감독하면서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체제로 가서 가격이라든가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한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진술인 서재철** 그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서는 일체 요금 받는 것이 없습니까?

○**진술인 서재철** 그래서 저희 쪽을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IP관리와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진술인 서재철** 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숫자가 800만 개쯤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도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숫자가 늘어나면 수입이 늘게 되니까요.

저희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약 9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네임스 김태제 사장님이 활동을 많이 해서 가지고 지금보다 숫자가 늘어나면 저희 수입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보면 .com 쓰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net 을 쓰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미국에 6불씩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매년 내는 돈이 50억이 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데 그것을 쪼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숫자도 못 늘리고 인원도 못 늘렸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재원이 되었던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기본만 주면 나머지는 이쪽에서 올려서 숫자가 늘어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엽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문제라든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술인 서재철** 예, 소비자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com, .net과 굉장히 심한 경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위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kr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써줘야 하는데 그것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매년 미국 베리사인에 돈을 내고 .com, .net 쓰고 있는데 벌써 MBC도 imbc.com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사이버 세상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늘리는 건 저희 자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3000만 개가 되면 당연히 1만 원 이하로 충분히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해 주시면 또 많이 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엽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혜석 위원** 열린우리당 서혜석입니다.

강명구 교수님께 여쭙어 보겠는데요, 지금 “민영화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실 민영화가 국제적인 추세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다 민영화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해당 산업이 기간산업이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분야냐,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통신 중에서도 유선통신이 굉장히 공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사실 민영화가 바람직한 것인가,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라는 것이 과연 기간산업 정도로 중요한가, 아니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민영화 방향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까 이수복 진술인께서는 보안문제와 관련해서 사용정보가 누출될 경우 산업보안 문제, 국가안보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면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고—제가 그 말씀에 반드시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고 보는데 강 교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주소 관리업무가 어느 정도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강명구 저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레지스트리(Registry)하고 레지스트라(Registrar)라는 것이 있는데 주소등록을 대행하는 업체들은 다 민영화되어 있고 민간 기업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지스트리를 분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아까 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영화하는 것과 민간부문으로 돌린다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미국은 ICANN은 베리사인이라는 기업이 운영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인데 전 세계 인터넷의 .com이나 .net의 관리나 운영, 정책을 결정하는 비영리법인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민영화해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민간화한다고 할 때 그것은 대부분의 나라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는 것이지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다 맡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서혜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말씀은 다 알아 들었습니다.

하나 더 여쭙어볼게요. 이번 개정안 관련해서 만약 민간기업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단체가 맡는 것이 좋다고 보니까, 아니면 영리단체도……

○진술인 강명구 비영리법인이 제 입장입니다.

○서혜석 위원 그렇다면 그 비영리단체가 하나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진술인 강명구 저희 현실로 봐서는 레지스트리는 대부분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레지스트리를 경합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라는 거의 사례가 없고……

○서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현실적으로 하나 정도의 비영리단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진술인 강명구 그렇지요. 그런데 그 형태는 기업이 그것을 비영리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서혜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NIDA도 사실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 비영리기관이 해도 한 기관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아까 무슨 창의성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창의성 문제라는 것은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할 때 좋은 창의성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결국 양쪽 다 독점이라고 하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홍창선 간사, 이해봉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태제 진술인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까 준조세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태제 진술인의 입장을 보니까 사실 어느 쪽을 찬성을 하시는지 명확치가 않아요. 준조세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원가라든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뭐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하시고, 동시에 민간으로 이양했을 때는 보안장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면 된다면 양쪽을 다 찬성하고 있는데 준조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느 쪽이 더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진술인 김태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업자 대표로서 여기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는 저희 상급기관인 NIDA도 앉아 있고 정보통신부에서 나오신 분도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로서는 의견 개진하기가 힘든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논의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조세화, 조세화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외국에 나가서 필드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싸우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싸워서 이겨야 한국이 1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을 키우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문제는 전혀 거론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준조세화는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흥원이 정통부 산하로 들어갔지만 2004년도에도 정통부에서 1원의 예산도 공식적으로 지원이 없었고 2005년도에도 공식적으로 1원도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준공무원 신분인 이런 분들에게 국민이 낸, 민간에서 걷은 수수료를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처사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혜석 위원 나중에 추가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다음은 홍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선 위원 홍창선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인터넷주소자원예관법률 개정으로 이렇게 공청회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우선 등록수수료의 준조세화 위험성이라고 할까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 운영상의 혼란이라고 할까, 비효율 그런 것은 어떤지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술인들이 발표하신 것하고 그동안 질의·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조세는 아니고 서비스 받는 쪽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이시고, 또 지금 수수료가 비싸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com하고 .net보다 숫자가 적으니

그것을 없애고 이리로 오게끔 해 달라 그런 뜻으로 들리네요?

○진술인 서재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com이나 .net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 너무 커져 가지고……

○홍창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com이나 .net을 못 쓰게 법 발의라도 해 달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수수료를 인하할 무슨 방안에 대한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백화점을 당장 문 닫게 하라 그런 것 같이 들려서……

(장내 웃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변이 납득이 잘 안 가세요.

그러면 수수료 산정기준이 언제입니까?

○진술인 서재철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창선 위원 언제 한 것이냐고요?

○진술인 서재철 2002년도 8월에 했습니다.

○홍창선 위원 기준이 다 있어요? 산출근거가요?

○진술인 서재철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 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출범하기 전 가격 그대로다 이것이지요?

○진술인 서재철 지금 변동이 없고 저희가 과거에 3만 3000원 하던 것을 2만 2000원, 2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계속 인하했습니다.

○홍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업체에다도 내고 이중으로 낸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술인 서재철 아닙니다.

○홍창선 위원 하나만 내면 다 된다?

○진술인 서재철 일반 사용자는 업체를 통해서 2만 2000원만 내면 되고요 그 안에서 1만 4000원이 저희 쪽에 들어옵니다. 저희는 2만 2000원이든, 2만 7000원이든 상관 없습니다. 저희가 하한치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홍창선 위원 그러면 실제로 1만 4000원이 아니고 2만 2000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진술인 서재철 일반 사용자는 2만 2000원입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2만 2000원도 될 수 있고 2만 7000원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민간에서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수수료 1만 4000원을 받는데 거기에는 도메

인, 서버, 기타 우리 인건비가 포함된……

○**홍창선 위원** 하여튼 .com이나 .net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더 줄일 방법이 없다?

○**진술인 서재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kr 쓰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창선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재 성격 여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진흥원이 정부기관은 아니지요? 지금 마치 정부기관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기업체하고 가운데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술인 서재철** 과거에는 민법에 의한 기관이었습니다.

○**홍창선 위원** 지금 만일 인터넷주소 관련해서 문제점이 노출되거나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효과적인 처리나 책임소재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김태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태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여러 이슈가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 정책이나 공공자원, 공공재 이것이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 드라이브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가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창선 위원** 김태제 사장님의 발제문 결론에 “1년도 되지 않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비용과 혼란이 자칫 예기치 못한 큰 혼란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선은 그냥 놔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지요?

○**진술인 김태제** 제가 보기에 지금 저희는 누구보다도……

○**홍창선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는 것이 복잡해요? 제가 그대로 읽었는데요.

○**진술인 김태제** 아닙니다. 그러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창선 위원** 그러니까 시행한 지가 1년도 안 되었으니까 좀더 두고 보자, 그런 것처럼 느꼈는데……

○**진술인 김태제** 의견을 좀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홍창선 위원** 그다음에 서재철 단장님, 이 법

을 시행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진술인 서재철** 작년 7월 30일부로 시행이 됐고 저희 원장님은 10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홍창선 위원** 그 입장에서는 지금은 너무 이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년쯤 지나면 이런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술인 서재철** 글썬요.

○**홍창선 위원** 한 10년, 3년 이내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술인 서재철** 그 연도보다는 ITU 형태라든지 ICANN 형태라든지 그 형태를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내 체제가 아니고 외국의 체제이기 때문에 외국의 형태를 보시면서 저희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홍창선 위원** 본 위원도 양쪽의 의견을 전부 들어봤는데, 이것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이래서 시기적으로 모양새가 적절한가 이런 개인적인 느낌은 듭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원칙적으로 성격이 이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닌가 해서……

하여튼 앞으로 양쪽 의견을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너무 .com, .net만 하지 마시고 수수료 문제는 좀 염두에 두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유승희입니다.

우선 김태제 사장님께……

29쪽에 보면 1년도 되지 않은 문구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통과된 것은 2003년 12월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고요, 시행된 것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복 위원님께……

자료에 보면 “인터넷주소체계를 하나의 상품체계가 아니라 보안체제로 봐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논리로 한다면 수수료를 받지 말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수복** 제가 알기로는 한국전산원 당시에는 수수료를 안 받고 등록을 해 주었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길남 교수님께서 랩(lab) 차원에서 1980년대부터 운영을 해 오실 때도 무료였고 2000년까지도 무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료로 했을 경우에 대규모 스쿼팅(squatting)의 발생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나라도 다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받게 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IDA가 레지스트라들한테 일체 돈을 안 받고 정부예산으로 NIDA를 다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 NIDA가 생성될 때 정부예산을 안 타는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명구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미국의 경우 실제로는 ICANN이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미국무성과 상무성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베리사인 같은 경우는 개별기업으로서 세계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시장을 독점하니까 이에 저항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도메인을 국가가 관리하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KRNIC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민간이었지만 전산원이 관리했고, 그런데 법적 권한에 대해 문제가 되니까 든든한 정통부가 나서서 법정기관으로 관리책임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터넷주소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아프리카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교수님께서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강명구 여기에서 좀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법안의 기본 정신과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은 사실상 국가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 2월 공

청회 자료에서도 그런 진술들을 제가 몇 번 봤고 오늘도 그런 진술들이 좀 있는데 사실상 정부가 다 규제를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대단히 사실과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미국 상무성이 ICANN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인터넷을, 글로벌해지니까, 비영리민간기구인 ICANN을 만들어서 그리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넘긴 것인데 그 ICANN이 미국정부와 맺었던 MOU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지 ICANN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미국정부가 ICANN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도 오류이고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틀린 이야기인 것이고,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ICANN은 비영리민간기구로서 누구에 대해서 어카운터블(accountable)하냐 하면 글로벌 네티즌에게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이슈가 뭐냐 하면 기업이 운영한다는 것과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민간이 협치한다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긴다는 것과 정부·시민사회·엔지니어, 이런 이해관계 집단들이 모여서 이해를 조정하고 동시에 협치한다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혼동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버넌스는 시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고 소비자인 네티즌들에게도 유리할 수 있고 또 이것의 안정성을 책임져야 할 정부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것들을 협치를 해서 만들어 낸다는 개념인 것인지 결코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민간에게 그냥 넘긴다는 뜻하고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섞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ITU 문제와 ICANN 문제가 나왔는데 미국이 ICANN에 대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기본적인 원리는 유엔 체제가 아니라 WTO 체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WTO 체제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원달러 원보우트(one dollar,

one vote)이고 유엔은 원네이션 원우보트(one nation, one vote)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원달러 원보우트도 아니고 원네이션 원보우트도 아니고 중간의 형태를 새로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부가 해야 된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섞어서 마치 유럽이나 미국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러 나라들이 정부가 그것을 장악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적 오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그와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유승희 위원**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NIDA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강명구** 그러니까 운영주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례가 구체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현행법이 인터넷정책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구성권을 정통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데, 저는 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이해관계 집단들이 모여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인터넷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대부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이런 것들은 대개 어떤 구체적인 갈등 사안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최종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점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kr과 .com을 한국인들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om이나 .kr의 운영과 관리의 주체가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정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ICANN과 협상의 상대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법률적으로는 정통부장관이 되고 한국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인터넷과 관련해서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다른 나라는 일반 비영리법인의 기관이 나오는데 여기는 정통부장관을 대리한 사람, 한국정부를 대리하는 사람이 나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인터넷진흥원이 국가기관이 되어서 입찰 기회를 잃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정통부 관리한테 들으니까 진흥원도 입찰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려면 사전예치금 같은 것이 필요한데 예산에 지출항목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NIDA의 이름으로 해서 결국은 민간 차원에서 지출을 하고 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빨리 민간위탁이 되어야 된다, 소탐대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우리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주소 관리는 성숙한 민간영역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서 말씀해 주신 네 분의 의견을 인터넷주소 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할 때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주시고 또 유익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네 분의 전문가 진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出席委員(13人)**

강성중	김석준	김낙순	김희정
류근찬	변재일	서상기	서혜석
심재엽	유승희	이해봉	진영

홍 창 선

○請暇委員(2人)

이 중 길 한 화 갑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구 회 권

전 문 위 원

이 진 호

○政府側參席者

정 보 통 신 부

전파방송정책국전파이용제도과장 이 정 구

○出席陳述人

전파차단장치 법안 관련 공청회

김종현 (광운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계경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충열 (대주주식회사 이사)

장윤식 (SK텔레콤 상무이사)

인터넷주소자원예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서재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센터장)

김태제 ((주)아이네임즈 대표이사)

이수복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 위원)

강명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